

2019 인천기업 지원정책 모아모아

기업이 웃는 날까지 정책들고 직접 찾아가는 블록톡!



BLOCK TALK
산단커뮤니티.블록톡

(사)남동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12 (고잔동 636-1) 65B 2L 304호

TEL. 032-812-4347 FAX. 032-812-4348 www.nicma.or.kr

2019 인천기업 지원정책 모아모아

기업이 웃는 날까지 정책들고 직접 찾아가는 블록톡!



BLOCK TALK
산단커뮤니티_블록톡

발 간 사

우리 남동국가산업단지에는 약 7,000개의
중소기업이 국가산업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국가 지원정책에 대해 정보가 어둡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사)남동경협에서는 블록특사업단을 운영,
매일 남동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이 책을 펴냅니다.
소책자이지만 부디 우리 남동국가산업단지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2019년 5월

(사)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회 장 박순용

CONTENTS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01. 채용 지원	9
02. 고용장려금 지원	13
03. 고용유지 지원	39
04. 청·장년 고용 지원	43
05. <참고> 신중년 적합직무 종류	49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01. 금융 지원	63
02. 기술개발 지원	87
03. 판로 지원	109
04. 수출 지원	127

인천광역시 지원사업

01. 인천시	143
02. 남동구	195
03. 강화군	227
04. 인천상공회의소	233
05. (재)신용보증재단	239
06.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243
07. 인천광역시 지자체별 지원사업	249

문의처

(사)남동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12
(고잔동 636-1) 65B-2L 304호
전화 : 032.812.4347 | 팩스 : 032.812.4348
www.nicma.or.kr

발행일 2019년 5월
발행처 (사)남동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발행인 박순용

디자인,인쇄
디바인컴퍼니 032.433.4001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01

채용 지원

02

고용장려금 지원

03

고용유지 지원

04

청·장년 고용 지원

05

〈참고〉 신중년 적합직무 종류

2019 인천기업 지원정책 모아모아
기업이 웃는 날까지 정책들고 직접 찾아가는 블록톡!

01

채용 지원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BLOCK TALK!

1-1. 채용지원 서비스

기업의 원활한 신규인력 채용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채용대행 등의 서비스

구인·구직 만남의 날

- 구인 기업과 구직자간 직접 만남·면접의 장을 제공하여 필요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행사
- 일시 및 장소 : 매주 수요일, 14:30 인천고용복지+센터 6층 대회의실

상설 채용관

- 구인·구직 만남의 날(주 1회)과 별개로 사업장 스스로 적합한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구인기업에 대하여 수시로 구직자 면접, 채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행사
- 일시 및 장소 : 수시(시간협의), 인천고용복지+센터 6층 대회의실

동행면접

- 개별기업 맞춤형인재를 기업현장에서 면접 볼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서비스
- 운영 : 수시 (시간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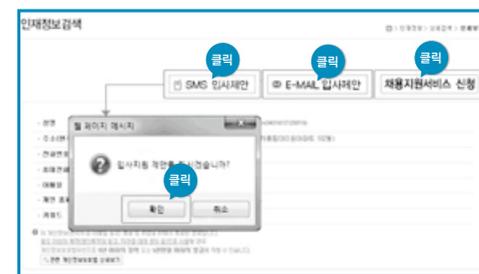
채용대행서비스

- 기업의 직원채용 비용절감을 위하여 모집·서류전형 등의 절차를 고용센터에서 직접 대행해주는 기업지원 서비스
 - ※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구직자의 취업촉진, on-off line 업무지원을 통해 최적의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
- 유형 : A형 구인광고/모집 → 서류전형
B형 구인광고/모집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 업체에서 필요유형 선택

일자리발굴전담제

- 지역 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업정보 현행화, 채용현황 및 계획에 따라 기업 지원제도 안내, 인재 추천, 구인 고충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등 기업별 맞춤형서비스 제공

1-2. 워크넷 채용공고



- 1 work.go.kr 기업회원 가입
- 2 구인신청서 작성 · 구인신청
 - 좌측메뉴의 [새 구인신청서 등록] 또는 중앙 상단의 [구인신청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3 인재정보 검색
 - 상단 [인재정보] 또는 좌측 [인재정보 검색]을 클릭하여 원하는 조건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
- 4 입사제안
 - 검색된 인재정보에서 적합한 구직자를 선택하여 상단의 [SNS입사제안] 또는 [E-mail 입사제안] 버튼을 클릭
 - 구직자의 연락처를 희망하는 경우 [채용지원서비스신청]을 클릭
- 5 결과입력(채용 / 취소요청)
 - 내정보관리에서 좌측메뉴의 [구인신청서 관리] 메뉴를 통해 구인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여 마감을 원하는 채용 공고의 [채용/취소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를 입력
 - 자체 채용인 경우 취소요청 버튼 클릭 후 채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채용일자 를 기재하여 처리

2019 인천기업 지원정책 모아모아
기업이 웃는 날까지 정책들고 직접 찾아가는 블록톡!

02

고용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BLOCK TALK!

2-1. 고용(창출·안정) 장려금 지원제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는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등 5개)과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 등 4개)이 있으며,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고용창출장려금 중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중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은 사업참여신청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지원 절차



사업참여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
- 구비서류
 - (공동)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 (해당기업만) 심사우대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국내복귀기업확인서,

* (고용창출)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강소기업 등),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 기업'

* (고용안정)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등),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청·지청장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한 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운영사업' 진단 참여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기업



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
-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2.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유형

유형	지원 내용
사업 참여 신청 필요	<p>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공모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p><증가한 근로자 1인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임금감소근로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p><기업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투자비 융자) 최대 50억원
	<p>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p><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기업규모 관계없이 월 60만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10만원
	<p>국내복귀 기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p><증가한 근로자 1인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p>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p><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사업 참여 신청 불필요	<p>고용촉진 장려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p><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p>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요건심사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p><증가한 근로자 1인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3년 지원 *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 (임금감소액 보전) 월 최대 40만원, 1~3년 지원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노선서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지원 요건

1 아래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가. 교대제 도입·확대

-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나.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 (주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다. 일자리 순환제

-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2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증가 근로자수

(제도 도입 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①) - (제도 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②)

①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의 근로자 (p.15 참고)를 제외하고 산정

②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와 비교 가능

- ③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조기단축 기업의 경우
 -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단체 협약 등을 제·개정 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 조기단축기업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 사업장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지원금 지급 단위기간인 3개월간 기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개정 법정근로시간 한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지원 내용

::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증가근로자 인건비*), 근로시간이 감소된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액의 일부(임금보전**)를 지원

- * 증가 근로자수 1명당 월 40~100만원 1~3년간 지원
- ** 1명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1~3년간 지원

:: 기타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용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비투자비의 일부(설비 투자비 용자*) 지원

- * 총 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월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 ① '18년 신설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요건심사 방식)
 - ※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기준(상시근로자 수)으로 지원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

상시근로자 수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1명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			
500인 초과	60만원, 1년		-	
300인~500인	제조업	80만원, 2년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40만원, 2년
	기타업종	60만원, 1년	기타업종	40만원, 1년
300인 미만	제조업	80만원, 2년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40만원, 2년
	기타업종	80만원, 1년	기타업종	40만원, 1년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기준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가. 500인 초과 기업

- 증가근로자 인건비 : 월 60만원, 1년 지원
- 임금보전 : 지원 불가

나. 300인~500인 기업

- 증가근로자 인건비 : 월 60만원, 1년, 제조업종은 80만원 2년 지원
- 임금보전 : 500인 이하 제조업종 및 특례제외업종도 2년 지원

다. 300인 미만 기업

- 증가근로자 인건비 : 제조업은 80만원, 2년, 비제조업은 80만원, 1년 지원
- 임금보전 : 500인 이하 제조업종 및 특례제외업종도 2년 지원

②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조기단축 기업

※ 법정시행일까지 6개월 미만인 기업은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 기준 적용

상시근로자 수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이후 40만원, 2년	40만원, 2년
300인 미만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이후 80만원, 3년
	기타업종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이후 80만원, 3년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기준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가.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 증가근로자 인건비 :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월 60만원을 지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 이후는 월 40만원 지원
- 임금보전 : 월 최대 40만원, 2년간 지원

나. 300인 미만 기업

- 증가근로자 : 법정시행일이 속한달까지 월 100만원을 지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 이후는 월 80만원 지원
- 임금보전 : 법정시행일이 속한달까지 월 최대 40만원

다. 지원기간

- 법정시행일이 속한달까지 지원
- 법정시행일이 속한달까지의 기간이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2년 미만일 경우 2년간 지원하고, 기타 업종은 1년 미만일 경우 1년간 지원

3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 특례

※ 버스업종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대 지원

상시근로자 수	법정근로시간 단축	52시간 조기단축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		
500인 초과	증가근로자 인건비	60만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이후 40만원, 2년
	임금보전	40만원, 1년	40만원, 2년
300인~500인	증가근로자 인건비	60만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이후 40만원, 2년
	임금보전	40만원, 2년	40만원, 2년
300인 미만	증가근로자 인건비	80만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이후 80만원, 3년
	임금보전	40만원, 2년	40만원, 3년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기존 재직자 20명까지 지원

2 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공모방식)

※ 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공모방식)은 고용보험법 기준(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으로 지원

구분	증가근로자 인건비(1명)	임금보전(1명)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비제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1년	40만원, 1년
	중견기업	40만원, 1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제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2년	40만원, 2년
	중견기업	40만원, 2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한도 없음,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임금보전 지원

지원제외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희·무도유희·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틀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 기타 지원제외 사업주 및 지원제외 근로자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및 지침」에서 정한 경우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

지원 대상

- 모든 사업주
-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 1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2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 '17.11.8. 이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최저임금 적용
 - * '17.11.7. 이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적용
- 3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4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5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 6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 수준 및 한도

- (인건비 지원) 기업규모 관계없이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60만원 지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월 10만원 지원

유형	기업규모 무관	1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인건비 지원	기업규모 무관	60만원	720만원
간접노무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10만원	120만원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실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지 않음

장려금 지급 제외

- 1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의 회차
 - 2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의 회차
- ※ 1 또는 2를 2회 위반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 주기 및 기간

-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신청,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

-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②)

- 1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 2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유형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90만원	360만원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지급 기간 및 주기

-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 월할 계산하지 않음

문의처 인천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 032-460-481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

- 1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2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3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4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15페이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참고)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유형	3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 월할 계산하지 않음

문의처 인천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 032-460-481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지원 대상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지원 요건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구직등록이 유효한 실업자를 고용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다음 페이지 참고)
-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 구직등록은 고용센터(work-net)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1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 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 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정규훈련, 맞춤형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국방부, 국가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 등)」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2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3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시」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됨

구 분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지원 수준 및 한도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유 형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

참 고

● 지원 인원 = 기준 피보험자수 - 제외 피보험자 수

	기준 피보험자수	제외 피보험자 수
원 칙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의 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가 30명 이상	30명	(2017.1.1.부터 적용)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1~10명	3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의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지급 기간 및 주기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문의처

인천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 032-460-4811

2-3.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유형

유형	지원 내용								
사업 참여 신청 필요	<p>●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p> <p>〈전환된 근로자 1인당〉 -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월 30만원</p>								
	<p>●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p> <p>〈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 (간접노무비) 1주당 5~10만원 ※ (주2일 이하) 5만원 (주3일 이상) 10만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직접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원 한도 (기업당)</p>								
사업 참여 신청 불요	<p>●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p> <p>〈전환된 근로자 1인당〉 - (임금감소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p>								
	<p>● (육아휴직 등 부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p> <p>●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p> <p>〈해당 근로자 1인당〉 -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육아휴직 등 부여 간접노무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육아기근로시간단축</th> <th>육아휴직</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대상기업</td> <td>월 30만원</td> <td>월 30만원</td> </tr> <tr> <td>대규모기업</td> <td>월 10만원</td> <td>미지급</td> </tr> </tbody> </table> <p>※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10만원 추가 지원 (1호 인센티브)</p>	유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유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미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10만원 추가 지원(1호 인센티브)

정규직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액,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고용안정 도모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지원 수준 및 한도

1 지원 수준

- (임금증가 보전금)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60만원 지원
 - ※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2 지원 인원 한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 다만,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를 한도로 하며,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를 한도로 함

*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전환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

지급 기간 및 주기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문의처

인천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 032-460-481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양립의 고용문화 확산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

-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 (연장근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유형	장려금 산정 기준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 제도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제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기준	연간총액		1주당 지급액	
	주3회 이상	주1~2회	주3회 이상	주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지원 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 기간 및 주기

-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



문의처

인천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 032-460-4811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습,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지원 대상

- (임금감소 보전금) 모든 사업주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대체인력 인건비) 모든 사업주
-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

- 1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 전환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자가 자녀보육·퇴직준비·학업·간병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전환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단, 초등학교 1학년 육아로 단축하는 경우 35시간 이하)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 2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전환근로자에 대하여
 -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 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전환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유형	지원대상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연간총액
임금감소 보전금	모든 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0만원	240만원

- (임금감소 보전금)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인 경우 월 24만원 한도로 지원
 - ※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장려금 지급 제외

- 1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 2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 ※ ① 또는 ②를 2회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 근로자의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최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 기간 및 주기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 대체인력의 실 근무기간과 전환근로자의 전환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과 간접노무비 지원은 실제 전환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문의처

인천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 032-460-481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양립의 고용문화 확산

지원 대상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부여 간접노무비 지원 시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제외)

지원 요건

- ❶ 육아휴직 등 부여 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❷ 대체인력 지원 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동 휴가·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 다만, 동 휴가·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2018.7.1. 이후 동 휴가·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지원 수준

- ❶ 간접노무비 지원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40만원 지원

지원유형	지원대상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 부여할 경우 10만원 추가지원(1호 인센티브)

❷ 대체인력 인건비

-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인수인계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 기간 및 주기

❶ 간접노무비 지원

- (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주기)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❷ 대체인력 인건비

- (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주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문의처

인천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 032-460-4811

2019 인천기업 지원정책 모아모아
기업이 웃는 날까지 정책들고 직접 찾아가는 블록톡!

03

고용유지 지원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BLOCK TALK!

3-1.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지원 대상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①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②한 후 휴업(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③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④ 사업주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기준달 :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 ①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
- ②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 ③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 ④ 기준달의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감소 추세
- ⑤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⑥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⑦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⑧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적용할 경우, 기준달 개념과 관계없이 관련증빙서류에 대한 고용센터의 검토에 의해 지원 유무 판단

②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 계획서의 제출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변경전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근로자대표와의 정상적인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합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무방
 - 협의의 방법사업주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휴업 등의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협의를 거치면 됨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 개최 시행 공문 중 택일하여 제출 가능
- * 변경 계획의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단축, 고용유지 대상자 수의 축소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생략 가능

③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휴업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이 20/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④ 계속고용 의무 준수

- 계속고용의 의미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
- 계속고용 의무기간고용유지조치 기간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 이후 1개월 까지를 말함

⑤ 지원제외 사유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제외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 실시를 하는 경우 지원 제외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경영 구조상의 당연한 결과인 경우는 경기변동, 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고용유지 조치계획 준수 의무 위반 시 지원제한
 -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 :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지급
 -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50% 이상으로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전부 부지급

지원 수준 및 지원 절차 - 지원 수준

구분	지원 수준	
	일반 고용유지지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휴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 지원, 1일 한도 7만원(단, 대규모기업은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휴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 지원, 1일 한도 7만원(단, 대규모기업은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 지원기간
 휴업·휴직은 모든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역(歷) 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제출(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지(고용센터)



인천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 032-460-4811

04

청·장년 고용 지원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BLOCK TALK!

4-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 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 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기업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②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 버림(예시: 연평균 8.6명 → 8명으로 인정)

지원 수준 및 기간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지원 예시 〉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30~99인	x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100인 이상	x	x	2,700만원	3,600만원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신청 절차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4-2.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지원 요건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

구분	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점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7%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75310)	12%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23%
기타 업종	7%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그 밖의 업종	2%

지원 수준 및 기간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27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대규모기업 10%) 한도.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 ('18년도 24만원)

지급 절차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문의처 인천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 032-460-4811

4-3.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임금 부담 완화

지원 요건 - 18개월 이상 근무한 만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
*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자 개인의 질병·부상, 부양가족 간병, 퇴직 준비 등 개인적인 사정
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폭 넓게 인정

지원 수준 및 기간 - 근로자 : 감액금액의 1/2, 연간 1,080만원 한도(최대 2년)
- 사업주 :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간접 노무비 지원(최대 2년)

신청 절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연도 1월 말일(매분기/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 가능)

 문의처 인천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 032-460-4811

2019 인천기업 지원정책 모아모아
기업이 웃는 날까지 정책들고 직접 찾아가는 블록톡!

05

〈참고〉

신중년 적합직무 종류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BLOCK TALK!

〈참고〉 신중년 적합직무 종류

직무 분야 (14개)	신중년 적합직무 (70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경영/인사 전문가	경영과 관련된 제안, 분석,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사, 노무 등 인적자원 및 노사관계 관련 전문가가 여기에 분류된다.	▶ 0221 경영·진단 전문가 ▶ 0222 인사·노무 전문가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감정 전문가	고객의 요구와 시장 흐름을 분석하여 새로운 상품을 기획 및 개발, 판매 촉진 전략 수립 등의 방안과 기법을 연구하거나 조언한다.	▶ 0241 광고·홍보 전문가 ▶ 0242 조사 전문가 ▶ 0243 상품 기획자 ▶ 0244 행사 기획자 ▶ 0293 통계 사무원 ▶ 0234 감정 전문가
	경영지원 사무원	기업 또는 단체 내부의 경영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기획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거나 영업 및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사무를 처리한다. 채용, 교육 훈련, 노무관리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한다. 기업 또는 단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 업무 전반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단, 지식이나 기능이 요하지 않는 단순 사무 업무는 제외한다.	▶ 0261 기획·마케팅 사무원 ▶ 0262 인사·교육·훈련 사무원 ▶ 0263 총무 사무원 ▶ 0264 감사 사무원
	회계/경리 사무원	회계 사무는 사업체 제반 거래사항을 기록, 정리하고 원가계산을 통하여 제조원가를 산출하며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결산 절차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경리업무는 청구서, 송장, 지불계정 및 수취계정, 예산 및 기타 일상적인 기록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계산하고 작성하며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0271 회계 사무원 ▶ 0272 경리 사무원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제품의 무역(해외거래)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차량·철도·선박·항공 등 운송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자재의 구매 및 물품 관리와 관련된 사무와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거나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0281 무역 사무원 ▶ 0282 운송 사무원 ▶ 0283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 0284 생산·품질 사무원
	금융/법률 사무원	금융/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무업무를 수행한다.	▶ 0315 손해사정사 ▶ 0222 법률 사무원
연구 관련직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철학, 역사학, 언어학, 심리학 등 인문학과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등 사회과학 관련 분야 지식을 응용하여 이론 및 운영 기법을 개선, 개발하며 학술적 논문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	▶ 1101 인문과학 연구원 ▶ 1102 사회과학 연구원

직무 분야 (14개)	신중년 적합직무 (70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연구 관련직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물리학·생물학·화학·지구 및 기상과학·천문 및 우주과학 등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과학자의 지휘, 감독하에 시험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 1211 자연과학 연구원 ▶ 1212 자연과학 시험원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생물학, 의학, 식품, 농업, 임업 등 생명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과학자의 지휘, 감독하여 시험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생명과학 연구 기관, 식품제조업체, 제약회사, 보건, 연구 및 교육기관, 컨설팅회사, 정부 등에서 일한다.	▶ 1221 생명과학 연구원 ▶ 1222 생명과학 시험원 ▶ 1223 농림어업 시험원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주변장치, 입력장치 등 컴퓨터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 및 유·무선 통신망 등 통신공학 기기, 기술, 네트워크를 연구, 설계, 개발, 시험한다. 또한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기기의 제조, 설치를 관리·감독하기도 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술 자문과 감리를 수행할 수도 있다.	▶ 13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 13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컴퓨터시스템의 입력 및 출력 자료의 형식, 자료 처리 절차와 논리, 자료 접근 방법 등 컴퓨터시스템의 전반 요소를 구체적으로 결정 및 설계하고 분석한다. 이 직업은 IT 분야와 관련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정보통신 컨설턴트를 포함한다.	▶ 1320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정보통신/방송 관련 기술·기능직 (기능직의 보조원은 제외)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 시스템의 자체 기능 수행명령 체계인 시스템소프트웨어와 사용자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명령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연구 및 개발하고 설계하며 이와 관련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133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 133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 1333 웹 개발자 ▶ 1339 기타 컴퓨터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수집 자료의 효용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설계하고 개선하거나 수집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처리하여 분석한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개발, 기획하고 설계 및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스템 사용자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훈련을 시키며 사용자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해 준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전문가도 여기에 분류된다.	▶ 1341 데이터 전문가 ▶ 1342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 1343 정보시스템 운영자 ▶ 1344 웹 운영자	

직무 분야 (14개)	신중년 적합직무 (70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정보통신/방송 관련 기술·기능직 (기능직의 보조원은 제외)	정보보안 전문가	해킹이나 각종 바이러스 발생에 대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전산망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보안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 시스템상 개인 정보의 유출을 막고 관련 보안 체계를 개발하는 전문가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	▶1350 정보보안 전문가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통신 및 방송 기술자의 지휘 감독하에 통신 및 방송 장비의 개발, 운용 및 보수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 1360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컴퓨터, 이동전화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설치하고 수리한다.	▶ 8411 컴퓨터 설치·수리원 ▶ 8412 이동전화기 수리원 ▶ 8419 기타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방송·통신장비 설치·정비원	방송장비, 통신장비, 통신케이블 등 방송이나 통신에 사용되는 장비를 설치하고 보수, 수리한다.	▶ 8421 방송장비 설치·수리원 ▶ 8422 통신장비 설치·수리원 ▶ 8423 방송·통신·인터넷 케이블 설치·수리원
	연극·영화·방송 기술자	연극, 영화, 방송에 필요한 촬영, 무대장치, 편집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계획하고 지도, 조정한다. 조명감독, 미술감독, 무대감독, 음향감독과 촬영과정 전반을 기록하는 스크립터도 여기에 분류한다.	▶ 4164 촬영 기사 ▶ 4165 음향·녹음 기사 ▶ 4166 영상·녹화·편집 기사 ▶ 4167 조명·영상 기사
의료/보건/사회 복지 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간호사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행하며 의사 부재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환자의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에게 치료, 질병 예방에 관한 설명을 해 준다. 조산사는 병원, 의료기관 및 가정에서 산모의 임신, 분만, 산후 처치를 보조하고 정상 분만을 유도하며 신생아 및 임신부나 산모를 간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3040 간호사
	영양사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음식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3050 영양사

직무 분야 (14개)	신중년 적합직무 (70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의료/보건/사회 복지 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물리치료를 비롯한 의료기사는 질병 및 장애의 진단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나 기술적 장비를 조정한다.	▶ 3061 임상병리사 ▶ 3062 방사선사 ▶ 3063 치과기공사 ▶ 3064 치과위생사 ▶ 3065 물리 및 작업 치료사 ▶ 3066 임상심리사 ▶ 3067 재활공학 기사 ▶ 3069 기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보건·의료 종사자	의사가 수행하는 것보다 범위와 복잡성에서 한정된 진단 및 치료 업무를 지원·수행하는 자로서 기타 예방 처치에 관한 직무에 종사한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를 돌보거나 치료를 보조하여 재활, 물리, 언어, 작업치료 등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기타 보건·의료 종사자를 포함한다.	▶ 3072 위생사 ▶ 3074 의무기록사 ▶ 3075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사회 문제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복지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진단,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2311 사회복지사 ▶ 2312 상담 전문가 ▶ 2313 청소년 지도사 ▶ 2314 직업상담사
	사회복지/교육 관련 종사자	정규학교 이외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제외한 각급 교육기관 또는 가정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자로서 특정 직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취업, 진학을 위하여 배우려는 학생을 가르친다.	▶ 2141 문리·어학 강사 ▶ 2142 컴퓨터 강사 ▶ 2143 기술·기능계 강사 ▶ 2144 예능 강사 ▶ 2149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번역가 및 통역가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거나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 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 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자를 말한다.	▶ 4112 번역가 및 통역가
문화/출판/디자인 (캐드) 관련 종사자	출판물 전문가	출판물 기획이나 편집 방향을 세우고 출판물에 수록될 원고를 조정한다.	▶ 4113 출판물 전문가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박물관, 도서관, 화랑 등에서 문화재나 서적 등을 발굴하고 보관, 정리, 관리한다.	▶ 4131 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 4132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디자이너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제품, 패션, 인테리어, 미디어 콘텐츠 등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혹은 실용성 있게 설계하고 디자인한다. ※ 단 창의력이 요하지 않고 기존 도안대로 작업하는 직무는 제외한다.	▶ 4151 제품 디자이너 ▶ 4152 패션 디자이너 ▶ 4153 실내장식 디자이너 ▶ 4154 시각 디자이너 ▶ 4155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직무 분야 (14개)	신중년 적합직무 (70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문화/출판/디자인 (캐드) 관련 종사자	제도사(캐드원)	여러 분야의 기술자, 건축가 또는 산업디자이너의 지휘하에 건축물과 제품이 실제 생산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작성한다.	▶ 1591 제도사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을 수행한다. 농수산물, 예술품, 기타 상품류를 증개하거나 경매를 통하여 판매한다. 이중 영업원은 영업품목의 특성 등에 따라 기술 영업원, 자동차 영업원, 제품·광고 영업원으로, 영업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 영업원을 구분하고 있다.	▶ 6121 기술 영업원 ▶ 6122 해외 영업원 ▶ 6123 자동차 영업원 ▶ 6124 제품·광고 영업원 ▶ 6125 상품 증개인 및 경매사 ▶ 6129 기타 기술 영업·증개 종사원	
	결혼을 원하는 남녀 고객에게 각자의 이상에 가장 부합하는 상대를 찾아내어 만남을 주선해주는 사람인 결혼상담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입각해 최적의 배우자와 연결시켜 준다. 웨딩플래너는 결혼하기 전부터 신혼여행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대행한다.	▶ 5121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영업/서비스/음식 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여행 서비스원	국내외 여행상품을 기획, 개발하여 고객에게 추천, 판매하고 여행과 관련된 예약·발권·안내·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전시시설이나 문화 및 자연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 5211 여행상품 개발자 ▶ 5212 여행 사무원 ▶ 5213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호텔, 한식당, 중식당, 일식집, 레스토랑 등에서 주방과 조리 관련 업무 전반을 책임 지거나 국, 찌개, 국물요리, 찜, 조림, 무침, 육류, 생선류, 면류, 분식 등의 다양한 음식을 조리하며 커피, 차, 등의 음료를 준비한다. ※ 단, 집단급식소(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요리하는 직무는 제외한다.	▶ 5312 한식 조리사 ▶ 5313 중식 조리사 ▶ 5314 양식 조리사 ▶ 5315 일식 조리사
건설 관련 기술 (엔지니어) 및 기능직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밀가루, 쇼트닝, 설탕, 소금, 팽창제, 물 등을 배합하고 제빵용 기계와 기구를 이용하여 반죽, 성형, 굽기, 장식 등의 과정을 거쳐 빵을 만들거나 케이크, 파이, 과자 등을 제조하고 장식하는 자를 말한다.	▶ 8711 제과·제빵원	
		건축, 토목, 조경, 도시·교통, 측량·지리정보 등의 분야에서 관련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계획 및 설계, 사업관리, 공사 관리·감독, 연구개발, 기술자문, 감리, 품질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1401 건축가 ▶ 1402 건축공학 기술자 ▶ 1403 토목공학 기술자 ▶ 1404 조경기술자 /9015 조경원 ▶ 1405 도시·교통 전문가 ▶ 1406 측량·지리정보 전문가 ▶ 1407 건설자재 시험원	

직무 분야 (14개)	신중년 적합직무 (70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건설 관련 기술 (엔지니어) 및 기능직	건설구조 기능원	건설 및 기타 건축물의 기초나 골조 그리고 벽, 바닥, 문틀 등 구조적으로 주요한 부위를 만들기 위해 강구조물 및 경량 철골 부재, 철근, 콘크리트, 석재, 벽돌, 목재 등을 사용하여 설치, 시공하거나 보수하는 일을 한다. 전통한식 기법으로 한옥이나 궁궐, 절 등 전통건축물을 만드는 직업도 포함된다. ※ 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기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한다.	▶ 7011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 7012 경량철골공 ▶ 7013 철근공 ▶ 7014 콘크리트공 ▶ 7015 건축 석공 ▶ 7016 건축 목공 ▶ 7017 조적공 및 석재부설원 ▶ 7019 기타 건설 구조 기능원
		골조가 세워진 건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보온, 방수, 위생, 안전, 아름다움을 위해 내·외부 벽체나 바닥, 천장, 문, 창 등을 대상으로 미장, 방수, 단열, 바닥재 시공, 도배, 유리 부착, 도장, 새시 설치 등의 작업을 한다. ※ 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기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한다.	▶ 7021 미장공 ▶ 7022 방수공 ▶ 7023 단열공 ▶ 7024 바닥재 시공원 ▶ 7025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 7026 건축 도장공 ▶ 7027 새시 조립·설치원 ▶ 7029 기타 건축 마감 기능원
	배관공	건물 및 기타 구조물, 플랜트,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등에 물, 증기, 가스, 공기, 연료 화학물 또는 기타 물질을 운송, 공급하는 각종 배관 설비를 수공구 및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가공·조립, 설치, 수리하는 일을 한다.	▶ 7031 건설 배관공 ▶ 7032 공업 배관공 ▶ 7039 기타 배관공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은 단거리 또는 장거리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트럭 같은 차량을 운전한다. ※ 단, 단순배달, 납품 등을 위해 화물차는 운전하는 것은 제외한다.	▶ 6223 화물차·특수차 운전원
	운전/운송 기능직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제품, 반제품, 중간소재, 자재, 재료 등의 중량물을 필요한 위치와 목적에 따라 운반, 교환, 장입, 적재하기 위하여 기중기를 운전한다.
건설 관련 기술 (엔지니어) 및 기능직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건설 또는 채굴 기계를 운전, 조작하여 흙이나 유사 물질을 대상으로 굴착, 운반, 정지, 천공,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살포 등의 일을 하거나 영농 및 임업에 사용되는 동력기계 장비를 운전, 조작한다. ※ 단 레미콘믹스트럭 운전, 신호수 등과 같이 기능이 요하지 않는 직무는 제외한다.	▶ 7040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직무 분야 (14개)	신중년 적합직무 (70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공학 관련 기술 (엔지니어) 및 시험원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발전, 운송, 생산 등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휘·감독한다. 여기에는 산업용 및 개인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해 특별기능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과 로봇 자체를 연구, 설계, 개발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기계장치와 시스템의 안정성, 성능 등 품질 시험 및 분석 등의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 1511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12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13 기계·로봇공학 시험원
		금속과 합금, 시멘트 등 금속·재료(비금속) 공학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휘·감독한다. 또한 이들은 금속 및 비금속의 물리적 특성, 성능 등 품질 관련 시험 및 분석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 1521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22 금속·재료공학 시험원
		전기·전자시스템 및 전기·전자 장비, 부품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휘, 감독한다. 또한 이들은 전기전자 시스템, 장비, 부품의 무결성과 물리적 특성, 성능 등 품질 관련 시험 및 분석 같은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 1531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32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33 전기·전자공학 시험원
		화학제품, 화학공정 및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며 산업화학, 플라스틱, 제약, 자원, 펄프 및 식품가공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감독한다. 또한 화학과 관련된 성분, 특성 등 품질 시험 및 분석 같은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화학공학은 석유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농약, 비료, 도료제품, 화장품, 비누 제품 등으로 세분화된다. 의약품 기술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 154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42 화학공학 시험원
		채광, 석유 또는 가스층 채취 및 추출과 개발, 유지를 연구하고 특정 재료,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 시험하는 에너지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과 환경보전에 위협이 되는 것을 예방, 통제하며 개선과 관련된 공학적인 일을 설계하고 계획, 수행하거나 폐기물 처리, 현장 개선이나 공해방지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공학기술자와 시험원을 포함한다. 위생 및 환경과 관련된 불만을 조사하고 음식점, 식품가공업체, 호텔 등 사업장의 위생, 공해 관리, 위험물처리가 정부 규정에 맞는지 검사하는 보건위생·환경 검사원도 여기에 포함한다.	▶ 1551 가스·에너지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52 가스·에너지공학 시험원 ▶ 1553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54 환경공학 시험원 ▶ 1555 보건위생·환경 검사원

직무 분야 (14개)	신중년 적합직무 (70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공학 관련 기술 (엔지니어) 및 시험원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신소재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섬유를 개발하고 섬유제품 제조를 위한 각종 공정에 관한 연구와 개발 및 시험, 분석을 한다. 또한 섬유의 성형처리 및 제작공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섬유 견본으로 실의 특성, 인장력, 수축 및 손상의 정도, 염료의 특성 등을 측정, 검사, 분석한다.	▶ 1561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62 섬유공학 시험원
		과학 및 공학 원리를 적용하여 식품 및 식재료를 연구, 개발하고 제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 기술 개발,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또한 각종 음식료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이나 원료 중의 비소, 납을 비롯한 중금속과 미네랄 성분을 시험, 분석한다.	▶ 1571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72 식품공학 시험원
		소방·방재·산업 안전, 위험관리 등 재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시설을 설계, 시공, 감리, 검사한다. 또한 재해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컨설팅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 및 계도, 개선, 건의 등을 수행한다.	▶ 1581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 1582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83 소방공학 시험원 ▶ 1584 산업 안전원 및 위험 관리원 ▶ 1585 비파괴 검사원
		기계장치, 운송장비를 제외한 공업용 또는 농업용 기계 및 기계식 장비를 설치, 검사, 정비 및 수리한다.	▶ 8111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 8112 승강기 설치·정비원 ▶ 8113 물품이동장비 설치·정비원 ▶ 8114 냉동·냉장·공조기 설치·정비원 ▶ 8115 보일러 설치·정비원 ▶ 8116 건설·광업 기계 설치·정비원 ▶ 8119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치 설치·정비원
		항공기, 선박, 기관차, 자동차,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를 조정, 유지, 정비, 수리, 교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8121 항공기 정비원 ▶ 8122 선박 정비원 ▶ 8123 철도기관차·전동차 정비원 ▶ 8124 자동차 정비원

직무 분야 (14개)	신중년 적합직무 (70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기계/금속 관련 기능직 (단순생산직, 기능직의 보조업무 등은 제외)	운송장비 조립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품을 조립 또는 검사하며 항공기, 선박, 철도기관차, 전동차 그 외 운송장비를 조립하거나 조립 결과를 검사한다.	▶ 8171 자동차 조립원 ▶ 8172 자동차 부품 조립원 ▶ 8173 운송장비 조립원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금속의 제련, 정련 과정에서 다기능 공정 통제장치를 조작하거나 제어하며 제1차 형태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일 기능을 가진 기기를 조작하거나 전체 생산 공정의 일부에 해당되는 기기를 조작한다.	▶ 8211 금속가공 제어장치 조작원 ▶ 8212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판금원 및 제관원	금속구조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금속소재를 절단, 용접,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판금기 및 제관기를 조작하여 금속재료 및 금속판을 각종 금속제품 및 그 부분품을 제작, 설치,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단, 덕트생산기 조작처럼 기능이 요하지 않는 단순업무는 제외한다	▶ 8221 판금원 ▶ 8222 판금기조작원 ▶ 8223 제관원 ▶ 8224 제관기조작원
	단조원 및 주조원	금속을 가열한 후 해머 등을 사용하여 금속을 두드려서 금속제품을 제조하거나 주형을 만든 후 주물 원료를 용해 및 주입하여 주조물을 제작한다. 철 및 비철금속 주물을 생산하기 위해 단조기나 주조기를 조작하는 직업을 포함한다.	▶ 8231 단조원 ▶ 8232 단조기조작원 ▶ 8233 주조원 ▶ 8234 주조기조작원
	용접원	각종 기계나 금속구조물 및 압력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용접장비나 기기를 조작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한다. 용접용 기계 및 로봇을 조작한다.	▶ 8241 용접원 ▶ 8242 용접기조작원
	도장원 및 도금원	다양한 제품 표면에 페인트, 에나멜, 래커 또는 코팅 기기나 분사 기기를 조작하거나 도금, 금속 분무 관련 기계를 조작한다.	▶ 8251 도장원(도장기조작원) ▶ 8252 도금·금속분무기 조작원
	전기공	전기설비 시설을 설치하고 수리한다. 산업 전기공, 내선 전기공, 외선 전기공이 여기에 분류된다.	▶ 8311 산업 전기공 ▶ 8312 내선 전기공 ▶ 8313 외선 전기공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사무용 전자기기, 가전제품, 영상, 음향기기, 현금인출기, 포스시스템, 의료기기, 광학 기기 등을 설치하고 제품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며 오작동 시 수리하는 일을 수행한다.	▶ 8321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 8322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 8329 기타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전기를 생산하고 배전을 통제하는 기계 장비를 조작한다. 각종 발전소, 전기통신공사, 일반 제조업체 등 비상전력설비가 있는 업체의 자가발전 부서에 고용되어 있다.	▶ 8330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건물, 아파트, 공장 및 기타 전기·전자 설비를 조작, 유지, 보수한다.	▶ 8340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직무 분야 (14개)	신중년 적합직무 (70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화학/의료/식품/기타 기능직 (단순생산직 제외)	석유·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석유 및 천연가스 제조를 위하여 화학물이나 천연원료를 성분별로 분리하거나 정제하는 관련 장치를 조작한다.	▶ 8511 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섬유/의복기능직	직물을 표백, 염색, 세척하는 기계를 조작한다. 패션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려 옷본을 만든다 ※ 단 재봉원, 재단원 등은 제외한다.	▶ 8613 표백·염색기 조작원 ▶ 8621 패턴사
	가구/귀금속/간판 기능직	목재, 가구, 귀금속, 간판 등의 분야에서 설치와 수리를 담당하거나 조작과 조립 기능과 관련한 일을 수행한다.	▶ 8831 가구 제조·수리원 ▶ 8842 귀금속·보석 세공원 ▶ 8852 간판 제작·설치원
	경영/마케팅 관련 신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 사회문제, 기업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개발·운영한다. ■ 기업재난관리자 기업 차원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사고대응 및 2차 피해방지는 물론 기업 활동의 사업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자 활동,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활동, 그리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활동을 수행한다. ■ 할랄전문가 할랄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품목 등에 대해 관련 절차, 할랄제품 마케팅 및 홍보, 수출무역 등과 관련한 사항을 컨설팅한다. 	
	신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체험코디네이터 초·중·고 학생이 관심을 보이는 직업을 보유한 기업 또는 사업장을 찾아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전직지원전문가 퇴직 후 이·전직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제2의 직업을 추천하고 이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한다. ■ 노년플래너(시니어플래너, 웰다잉강사) 고객의 노후 건강관리법, 자손과의 인간관계, 노후설계 등에 대해 상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산림치유지도사 숲이 가진 치유 기능을 활용하여 산림 휴양 이용자가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지도한다. ■ 산업카운슬러(감정노동상담사) 기업의 작업환경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문제를 파악해 근로자가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며, 정도가 심한 부적응자는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상담사에게 연결한다. 	
	사회복지/교육 관련 신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플래너(시니어플래너, 웰다잉강사) 고객의 노후 건강관리법, 자손과의 인간관계, 노후설계 등에 대해 상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산림치유지도사 숲이 가진 치유 기능을 활용하여 산림 휴양 이용자가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지도한다. ■ 산업카운슬러(감정노동상담사) 기업의 작업환경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문제를 파악해 근로자가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며, 정도가 심한 부적응자는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상담사에게 연결한다. 	

직무 분야 (14개)	신중년 적합직무 (70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p>신직업</p>	<p>공학관련 신직업 (4차 산업혁명 등)</p>	<p>■ 3D프린팅운영전문가 3D프린터를 조작·운영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미니어처, 액세서리, 일상용품, 개인 편의제품, 기계부품, 시제품 등을 제작(출력)한다. 3D모델링이라고 부르는 설계과정을 비롯해 3D프린팅 과정, 출력된 제품의 후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제품을 만든다.</p> <hr/> <p>■ 빅데이터전문가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처리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p> <hr/> <p>■ 연구장비전문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전문장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장비운용을 통해 데이터 산출, 해석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한다.</p> <hr/> <p>■ 연구실안전전문가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수행하거나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하고 조언한다.</p> <hr/> <p>■ 화학물질안전관리사 화학물질 등록 및 위해성 평가 대행, 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계획서 작성 및 관리,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업무를 한다.</p>	
	<p>공학관련 신직업 (4차 산업혁명 등)</p>	<p>■ BIM전문가(디자이너)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시설물을 구현한다.</p> <hr/> <p>■ 드론 전문가 상업용 드론 시장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드론 표준 전문가, 드론 수리원, 드론 운항 관리사, 드론 조상사 등 드론 관련 신직업이 분류된다.</p>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01

금융 지원

02

기술개발 지원

03

판로 지원

04

수출 지원

2019 인천기업 지원정책 모아모아
기업이 웃는 날까지 정책들고 직접 찾아가는 블록톡!

01

금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BLOCK TALK!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자금지원 공통사항 |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기업, 용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지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 3조 7,200억원

- * 창업기업자금(2조 1,3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2,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1,8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8,8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2,3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 전략산업 :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용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 범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용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용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용자 한도

- 개별기업당 용자한도는 중소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용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 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 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2%p(최대 2%p)
 -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3%p
 -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
 -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금리우대(고용, 수출)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
 -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투융자복합금융 등)은 제외

용자 방식

- 중진공에서 용자신청·접수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업력7년 미만)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용자 절차

- 용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용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일 자금 희망 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일 조정 가능
 - *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사전상담)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고용창출, 수출 및 시설투자 기업 등은 우선 지원)
 -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용자신청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표준진단, 종합진단) 대상 여부를 결정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 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 가능
(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와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융자 제한 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융자제한 조치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 제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신청기업 중 국내 복귀기업
-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융자제한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단, 제조업 또는 전략산업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⑨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 예외)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 자금 적용 제외)
-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 가능)
-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 ⑫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기에 한하여 적용
 - 졸업기업이라도 재해피해를 입은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지원 가능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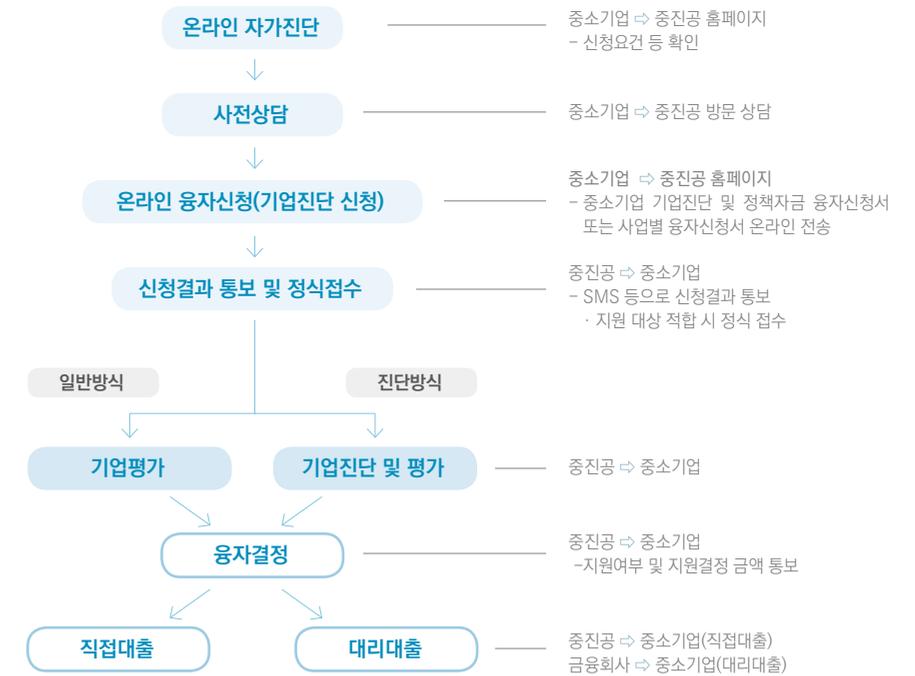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 2019.1 ~ 자금 소진시까지(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2. 창업기업자금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 규모

2조 1,300억원

* 2018년 11월말 신청기업 13,658개사 중 11,179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2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혁신창업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혁신창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창업사업연계자금 별도 운용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창업사업연계자금

- 창업투자 : 민간 VC 등 투자유치, 크라우드 펀딩 성공 등
- 창업R&D :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성공판정
- 창업양성 : 청년창업사관학교, TIPS팀,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분사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
- 창업BI : 정부 및 지자체, 대학 BI 입주 및 졸업(3년 이내) 기업
- 경영·기술혁신형 창업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근 1년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 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등
-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용어설명 |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회의 :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것

기업회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용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지원 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서 최근연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장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수출향상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한 기업

- * 최근 3년 이내 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 외부 연구용역(디자인, 앱 개발 등)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투자자금은 혁신창업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만 지원

융자 조건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2%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투자자금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기업당 20억원 이내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융자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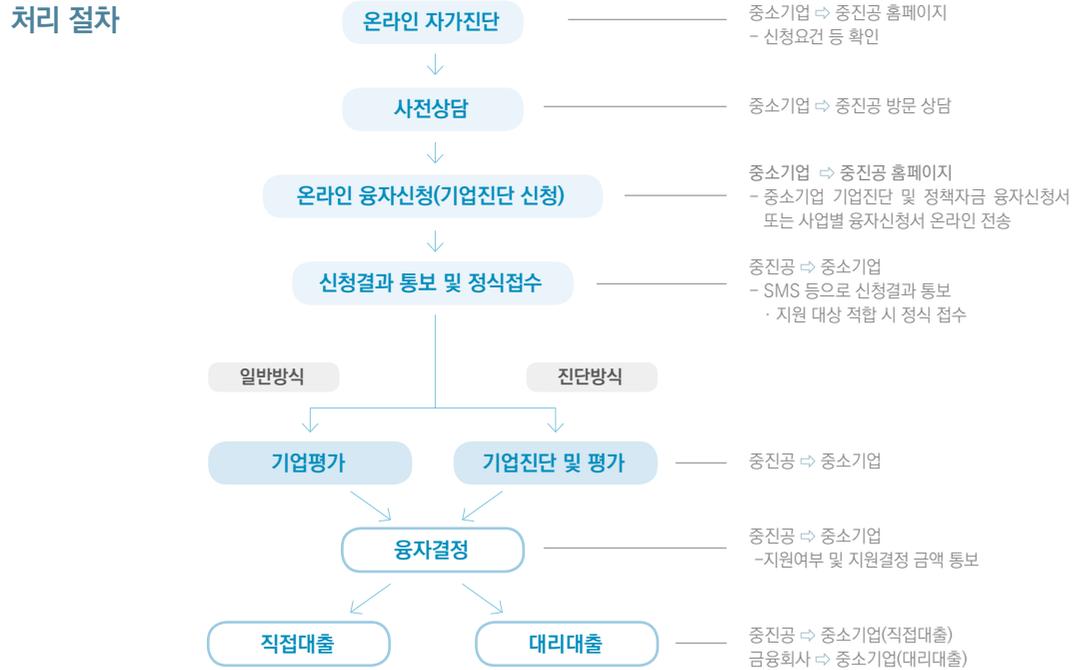
- 혁신창업지원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2019.1 ~ 자금 소진시까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3. 신성장기반자금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촉진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지원 규모 8,800억원
 * 2018년 11월말 신청기업 1,787개사 중 1,648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6.4억원

지원 대상 혁신성장유망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유망)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중 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기업, ②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③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스마트공장, 공정혁신 및 자동화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 중소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용자 가능(단,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용자 불가)

용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 단,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의 시설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방식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시운전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 및 신용)방식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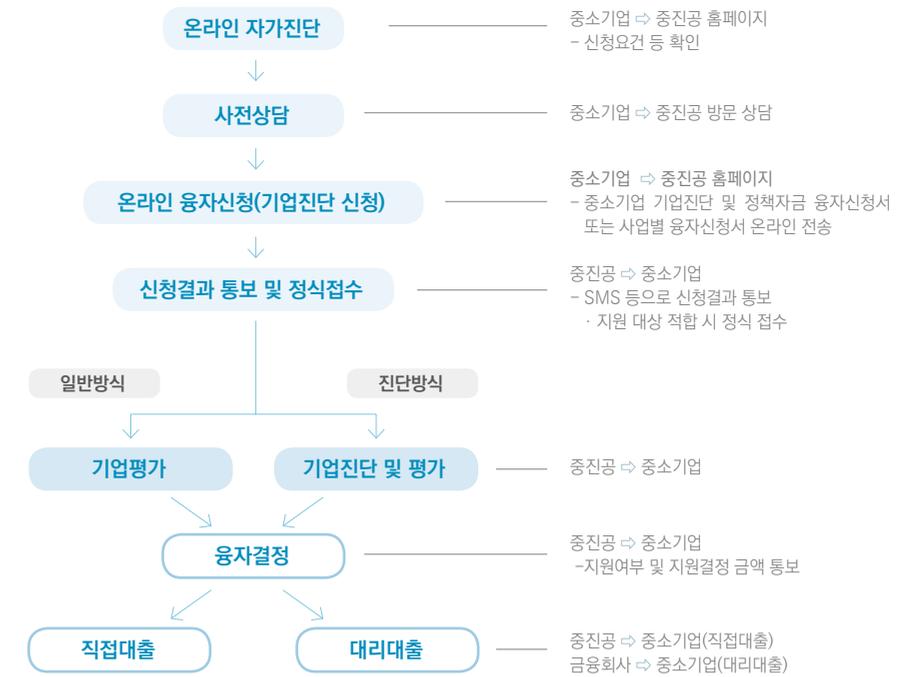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2019.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4. 신용보증기금

|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 보증잔액 46조원으로 운용
* '18년 지원규모(10월말) : 45.7조원

지원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①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②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 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상거래 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 보증한도
▷ 30억원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00억원 까지 보증지원 가능

자 금 종 류	보증한도
시설자금	100억원
구매자금용,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70억원*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30억원~70억원까지 차등화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매출액한도 :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의 1/2~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신청·접수

-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업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구 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납세사실증명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 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고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 동의 시 전산으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 주주명부 ■ 기업개요표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시 제출

처리 절차

단계 별	처리 내용
신청 및 상담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	
자료수집 및 조사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신보 직접 수집하며, 일부자료는 기업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약정 및 보증서발급	- 신용보증 약정체결 : 고객의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씨 Q&A



Q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분	내용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해 유형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고용창출기업 보증	-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유망서비스기업 보증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시설자금특례보증	- 자가사업장 신축 또는 매입, 공정자동화 및 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지식재산보증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SMART융합보증	- ICT, 과학기술 기반의 H/W, S/W 도입, 산업융합 신제품, 첨단융합 품목 생산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사회적경제기업에 특화된 보증 상품 지원**
기타	- 신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뿌리산업 영위기업,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등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 종류 : 고용창출 특례보증,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보증, 고용의질 우수기업 우대보증 등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종류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마을기업 두레보증, 자활기업 초록보증

Q 보증료는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증료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납하며, 보증료율은 보증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운용합니다.

1-5. 기술보증기금

| 기술력 보유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신용보증 |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019년 기술보증 잔액 20.9조원으로 운용(유동화회사보증 0.4조원 별도)
* '18년 10월말 현재 기술보증 잔액 : 21.8조원 (유동화회사보증 0.5조원 제외)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①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②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대출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 대출에 대한 보증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신청·접수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행정 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내 세무 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 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 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 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 1544-1120(www.kibo.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6. 지역신용보증재단

|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중소12조원 보증공급(보증잔액 21.4조원)
* 햇살론사업자 포함(공급 0.3조원, 잔액 0.9조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채무관계자 등
- ②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대출 보증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신보 및 기보의 기 보증금액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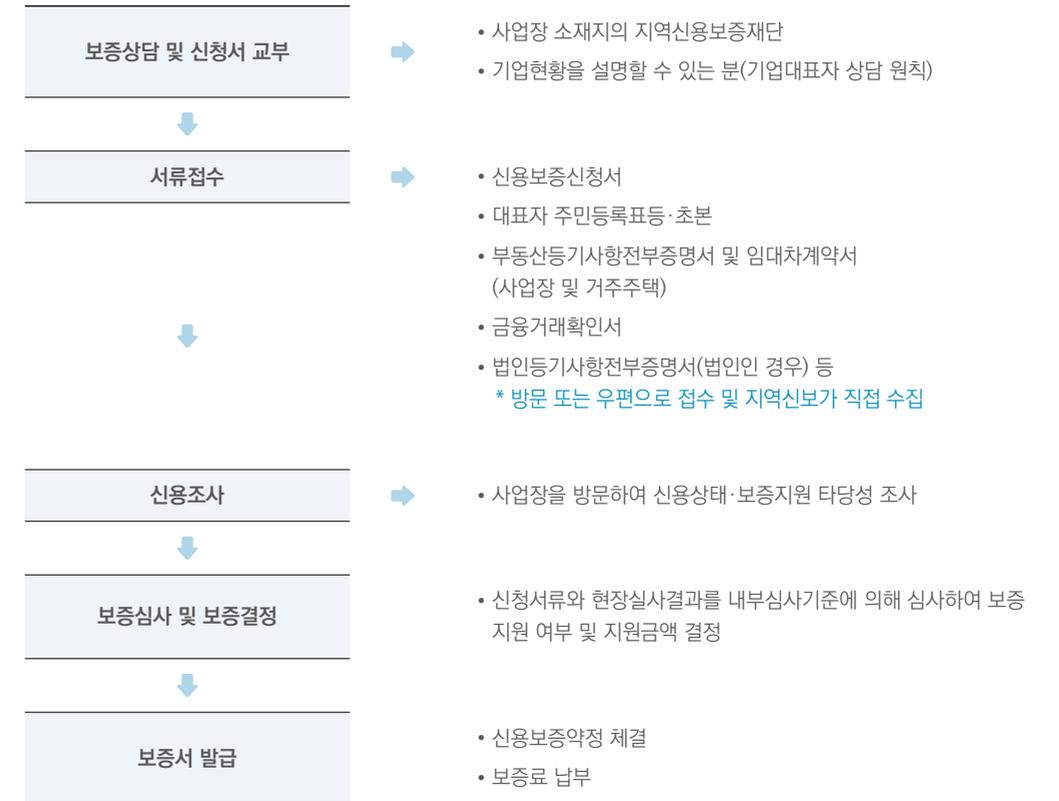
분야	내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8억원 이내
시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 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처리 절차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www.koreg.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함께 알아보는 기술개발지원 Q&A



Q LED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휴대폰용 LED 부품 개발 의뢰를 받아서 판매처는 확보되었는데, 저희 회사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A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수요처(정부,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로부터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발급받으신 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참조)

Q 산업용 케이블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제품 신뢰성에 자주 문제가 발생해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첫걸음기술개발의 경우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며 1억원 한도 내에서 75%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약기술개발은 혁신역량 부족, 성장 정체 기업 등에 대해 1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구개발비의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참조)

Q 자동차, 선박부품 등의 주철을 제조하는 소기업입니다. 주문물량은 느는데 계속 사람을 뽑자니 애로가 많아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인력문제를 해소하고 싶습니다.

A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 사업은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를 과제당 5천만원을 한도로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참조)

Q 3년 전부터 난연 플라스틱 제조 및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험장비가 고가이다보니 자체 해결이 어려워 연구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A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비사용료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를 먼저 구매한 후 장비를 이용하시는 방식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조)

Q 중소기업이 R&D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기획지원 프로그램은 없는지요?

A A R&D 기획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 및 기술에 기업이 보유한 R&D 자금, 인력 등 기술개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의 R&D 기획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사업 참조)

Q 냉장고나 세탁기의 PC기판 사출성형 업체입니다. 공장에서의 생산관리를 자동화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을 지원받아 생산시점관리(POP)를 구축하시면 됩니다. 작업 지시서에 제품명, 납기일, 생산수량, 작업자 등의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붙여서 생산관리를 하게 되면 생산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참조)

Q 산업용 잉크 제조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이직이 잦아 기술유출 우려가 늘 존재하는데 자체적으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A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상담과 보안시스템을 구축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보호 상담의 경우 사전진단(1일)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심층진단은 일정 비용 부담), 보안 시스템 구축은 총비용의 50% 이내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기술유출 방지사업 참조)

2-1. 창업성장기술개발

|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추진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약 2,999개(신규 1,996개) 과제(예산 3,733억원)

* '18년 지원현황 : 7,682개 과제 신청, 1,304개 과제 선정(5.9:1)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후 7년 이하이며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창업기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문 참조)
 -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회사), 초기 전문 VC, 선배 벤처기업 등 TIPS 운영사의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②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최대 2년, 5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80% 이내)

- 창업기업과제(2,363억원) : 일반 및 혁신형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디딤돌 창업과제(1,068억원) : 일반 창업기업 및 여성기업 등의 창업 저변 확대형 단기 기술개발 지원(1년, 1.5억원 이내)
 - 혁신형 창업과제(1,006억원) : 고기술·유망기술 등 4IR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2년, 4억원 이내)
 - 선도형 창업과제(289억원, 신규) : 혁신성장 선도분야 중 창업기업의 성과 창출 및 창업 진출이 유리한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1년, 3억원 이내)
-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1,235억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5억원 이내)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지원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창업기업과제	디딤돌 창업과제	최대 1년, 1.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혁신형 창업과제	최대 2년, 4억원		품목지정 (4IR 분야)
	선도형 창업과제	최대 1년, 3억원		지정공모 (혁신성장분야)
기술창업투자 연계과제	민간투자 주도형(TIPS)	최대 2년, 5억원		자유공모

지나해와 달라진 내용

- 혁신형 창업과제 지원확대
 - 혁신역량이 우수한 창업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1,006억원)하고, 지원규모 및 기간을 상향 (('18) 1년, 2억원 → ('19) 2년, 4억원)
- 내내역사업 조정
 - (신설) 창업기업 과제 내 선도형 창업과제 신설(1년, 3억원 이내, 혁신성장분야 지정공모)
 - (폐지) 기술창업투자연계 과제 내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과제 폐지(혁신형 창업과제 지원유형으로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과제별 공고 참조, '19.1월 중 공고 예정)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제출 서류

처리 절차

< 창업기업 과제 >



〈 기술창업투자연계 과제 〉



궁금해요! 중기씨 Q&A 

- Q**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은 부채비율이나 자본잠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자격요건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검토하므로 관련 사항을 해소한다면 신청 가능하나,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창업과제의 경우 주관기관 외에 참여기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참여기업은 선택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우 참여토록 하시면 됩니다.
- Q** 창업기업의 입력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력을 산정합니다.
- Q**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등을 자세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부 내용은 각 신청차수별 공고문에 상세히 표기할 예정이며, 차수별 공고문은 '18년 12월말 중소벤처기업부 R&D 통합공고문에 수록된 일자를 기준으로 www.smtech.go.kr에서 각 차수별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2, 397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1~0338
 홈페이지 : 중소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2.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R&D 지원 |

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의 구매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지원

- 지원 규모** 신규과제 약 412개 과제(전체 예산 1,588.5억원)
 * '18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1,374개 중 362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2.1억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②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 내용**
 - (지정공모과제) 국내·외 수요처(정부,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 (자유응모과제)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은 과제

구분	지원규모	개발비 비중		
		정부	주관기관	수요처(투자기업)
국내수요처 R&D(지정공모, 자유응모)	최대 2년, 5억원	60% 이내	25% 이상	15% 이상
해외수요처 R&D(자유응모)	최대 2년, 5억원	65% 이내	35% 이상	-
R&D PIE	최대 2년, 6억원	60% 이내	25% 이상	15% 이상
민관공동투자 R&D(지정공모, 자유응모)	최대 2년, 10억원 (투자기업 5억원 포함)	37.5% 이내	25% 이상	37.5% 이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민간부담금 확대 : 국내수요처 자부담 15% 중 10%는 현물, 5%는 현금부담
-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분야 선점을 위해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6억원 이내)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19. 1월 중 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등 적합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사업비 계산, 재무제표 등을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출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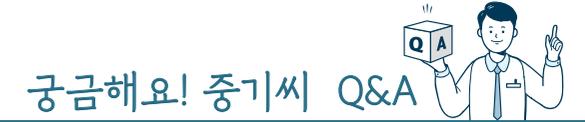
< 지정공모과제 >



< 자유응모과제 >



* (전문기관) 기정원 (관리기관) 지방청, 대중소재단 (운영기관) KOTRA, 기품원



- Q** 수요처(투자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지정공모 및 자유응모과제 모두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Q** 해외수요처의 신용조사 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기업제안과제 신청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한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는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해외신용조사보고서는 발급시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58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15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712~8719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3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새로운 BM발굴 및 신시장 창출 |

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68개사 내외(예산 121억원)
 * '18년 지원현황 : 신청 326개 과제중 제품서비스화 23개, 신규서비스창출 11개, 업종공동 서비스 11개 총 45개 선정지원 (예산 83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 신청가능

- (제품서비스화과제) 제조업을 영위하며 제조제품(서비스융합 대상제품)을 보유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획득 또는 유효한 인증서 보유 기업
- (신규서비스창출과제) 서비스업종 영위기업
- (업종공동서비스과제) 서비스업 영위 기업으로서 본점과 지점, 복수의 사업장 보유 기업, 중소기업 컨소시엄(2개사 이상), 업종별 협·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제품서비스화과제) 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제품의 서비스화 개발을 통한 신사업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 (신규서비스창출과제) 기술창업이 활발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구현 지원
- (업종공동서비스과제) 본점과 지점, 복수의 사업장 보유 기업, 업종별 단체와 회원사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현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품서비스화	최대 1년, 2억원 이내		자유응모
신규서비스창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65% 이내	자유응모
업종공동서비스	최대 1년, 2억원 이내		자유응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원제도 및 평가체계 개선
 - 기획기관 참여방법 : ('18년 사전매칭 필수 → '19년 선택적 참여)
 - 비즈니스 모델 평가 강화 : 1단계) 기술성평가(BM 기술구현 가능성 위주 평가) → 2단계) BM평가(비즈니스 모델 심층 평가)
 - 평가체계 개선 : 평가방법/기준 개편 및 사업계획서 항목 간소화

신청·접수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의·도전성, 기술성 :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기술구현 가능성, 서비스 모델 개발의 창의·도전성 및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및 정량적 측정 가능성
- 사업성 : 비즈니스모델 혁신성 및 차별성, 서비스 사업화 계획 타당성, 수익창출 모델 적절성 및 구체성, 시장진입가능성, 수출가능성, 고용 창출 가능성

제출 서류

평가단계별(신청·접수단계 / 대면평가단계) 제출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

● 사업추진절차



*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추진일정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19.2월	3월	4~5월	6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어설명 |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이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규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7, 0319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4. 산학연 Collabo R&D

| 산학연 협력R&D를 통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확대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

지원 규모 123억원

지원 대상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
 - * 2단계 사업화 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화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유의사항 : 예비연구 신청시,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와 주관기관 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및 위탁연구 실적이 없어야 함

지원 내용

- ① 예비연구(PoC) → ② 사업화 R&D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를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산학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75% 이내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	최대 2년, 4억원	75% 이내
산연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75% 이내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	최대 2년, 4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 '19년에는 1단계 예비연구만 지원하며 2단계 사업화 R&D는 '20년부터 지원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예비연구)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고용친화도, 예비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예비연구방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화 기술개발)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예비연구 목표달성도, 사업화 기술개발계획, 사업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3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씨 Q&A

- Q** 1단계 예비연구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1단계 예비연구결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을 걸로 판단되는 50% 과제만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1단계 예비연구 신청 시에 예비연구 수행 계획만 제출하면 되나요?
- A** 아닙니다. 예비연구 신청시에 2단계 사업화기술개발계획까지 포함한 전체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단계 계획은 개략적으로만 작성하시면 되며, 상세계획은 1단계 예비연구 수행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용어설명 |

• 예비연구(PoC, Proof of Concept) : R&D를 통한 기술 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사업화를 확인하는 단계로 사업화 아이템·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2-5.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 제품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지원 규모 1,123개 기업(전체 예산 443.8억원)
 * 기획평가비 15.8억 포함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969개 기업, 323억원)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154개 기업, 105억원)

* '18년 지원현황 : (제품·공정개선) 2,049개 기업 신청, 1,032개 기업 지원
 (뿌리기업공정) 230개 기업 신청, 120개 기업 지원

지원 대상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미만인 기업. 단,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①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②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자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등

지원 내용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기존 공정 및 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과제당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1년 이내
 - 제품개선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 지원
 - 공정개선 : 제조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기술의 파급성 및 공공성이 높은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과제당 1억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1년 이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제품공정 지원대상 제한 : 전체 중소기업 →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미만 중소기업
- 공정개선 과제에 적합한 서식수정(사업계획서, 최종평가표)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과제 우선지원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평가체계 개편 : 대면평가 → 현장평가 방식에서 서면평가 → 현장평가로 변경
- 신청·접수 시기조정 : (제품) 2,4,7 (뿌리) 2,7 접수
- 우대가점제도 개선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5점)추가, R&D기획지원 사업추천 과제(1점)삭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추진일정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19년 1월	'19년 2월, 4월, 7월 (3회 신청·접수 예정)	'19년 3월~9월	'19년 4월~10월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19년 1월	'19년 2월, 7월 (2회 신청·접수 예정)	'19년 3월~9월	'19년 4월~10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기업의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역량,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개발결과의 기대효과 및 사업성 등을 현장에서 평가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서면평가 후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역량 등에 대한 현장평가(서면평가 60% + 현장평가 40% 반영하여 선정)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공정개선과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및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처리 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사업신청서류 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온라인 접수, smtech)
요건검토	전문기관
서면평가(뿌리기업공정만 해당)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현장평가	전문기관 (해당분야 전문가)
과제선정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주관기관
과제관리, 최종점검	관리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최종평가위원회)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기관) 과제신청 업체,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궁금해요! 중기씨 Q&A



- Q**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오, 탈락기업(후보기업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지원 제외되는 사항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Q** 자동화 장비 구매 및 설치하는 것도 본 사업으로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공정품질은 R&D사업으로 단순 장비구매, 조립은 불가능하며, 공정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행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 Q** “기존제품”에 타사의 기존제품도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본 사업은 자사의 기존제품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사의 제품을 개선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60, 895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42-388-0761, 0762, 192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6.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및 ICT를 접목한 생산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월말 공고예정)

지원 규모

- 예산 : 3,125억원(4,000개, 민간포함)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조선키자재 업체, 위기지역 소재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 청년 친화형 산단, 스마트산단 입주기업,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지구 입주기업, 소비재 수출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관련 기업,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 기업은 선정시 가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①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②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③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④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⑤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⑥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지원 내용

- (지원분야)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 *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 및 협동로봇·장비 등이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 제품개발지원시스템
 -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 지원을 하는 시스템(예, PLM)
 - 공급사슬관리/최적화
 -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줄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 *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 기업자원관리시스템
 -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예, ERP)
 - *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 (지원조건)
 - (스마트공장구축) 미 구축기업 대상 최초 구축 비용 지원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지원
 - (고도화지원) 기 구축기업 대상 고도화 비용 지원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1.5억원 지원
 - *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으로 편성

신청·접수

- (신청기간) 사업공고기간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 홈페이지(<http://it.smplatform.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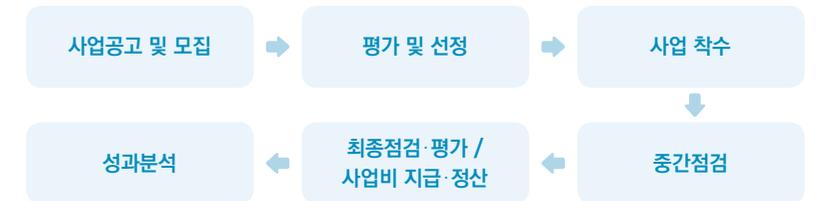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현장실사, 기술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 현장실사를 통한 점검 및 심사평가위원회 평점을 산정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 전문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공고 첨부양식 활용)
 - * 신청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http://it.smplatform.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유효기간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 절차



문의처

상담센터 : 1644-173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기업지원실 : 042-388-0758, 0759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9년 지원시책」 참조

03

판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BLOCK TALK!

함께 알아보는 판로지원 Q&A

Q LED 조명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있는지요?

A LED조명은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해 보십시오.(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참조)

Q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직접생산 확인 현장 실태조사에 번거로움이 있는데 매년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A 과거에는 1년 단위로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매년 현장 실사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0.10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직접생산 확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Q 2008년부터 기능성 등산스틱을 생산해 온 기업입니다. 판로 확보가 어려워 등산관련용품을 생산하는 몇 개 업체와 공동 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A 공동상표를 개발하려는 기업이 5개 이상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한도 내에서 상표개발 소요 비용의 70%를 지원해 드리며 공동 상표의 홍보도 지원해드립니다.(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참조)

Q LCD TV를 생산해 판매하는데 최근 판매가 늘면서 AS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A 중소기업의 공동 AS센터를 통해 AS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시면 전국 AS 지점망을 통해 AS콜센터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성능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구매담당자가 꺼려하네요.

A 공공기관에 납품된 중소기업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성능보증제도가 있습니다. EPC(성능인증),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 가입대상입니다. 성능인증을 받으셨으니 가입하실 수 있고, 보험료율은 보증보험 형식이어서 제품가격의 0.1~0.5% 정도로 저렴합니다.

Q 퓨전소스를 개발해 프랜차이즈 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려니 인력이 부족한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언론매체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수 제품을 선정해 TV, 신문 등의 언론매체 프로그램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매년 1,000여개 제품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참조)

Q 생활용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로 납품을 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A 중소기업 구매상담회와 판매전에 참여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9회의 구매상담회를 통해 2,850개 업체를 지원하고 43회 판매전을 통해 540여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구매상담회 지원 사업설명 참조)

Q 온라인 교육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마케팅 부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은데요.

A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마케팅 실전 교육이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기획부터 상품 및 서비스 기획, 판로 개척 및 활성화 전략, 마케팅 문제해결 등 총 4단계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중소기업 마케팅 기반조성 사업설명 참조)

3-1.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중소기업만 수주하는 공공구매 |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공공기관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 3년('19.1.1~'21.12.31)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차년도 적용 경쟁제품 신청·접수 및 지정

지원 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 방식은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 * 대상제품 지정 현황('19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2개(레미콘, 아스콘 등)
-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직접구매 제외 경우

-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 계약에 따라 단기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 ②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 ③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 도서, 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특정 공사용 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 지연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 턴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 수준의 자재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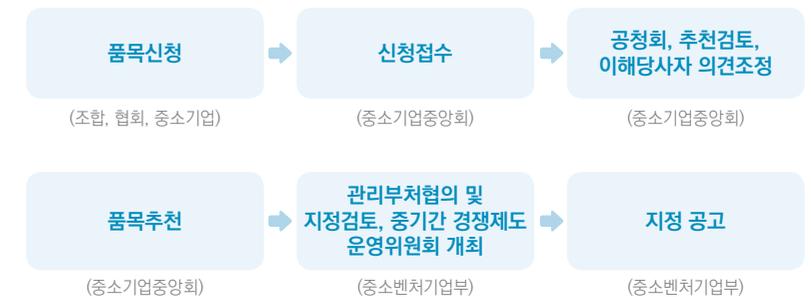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단체 또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 * 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공지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

유의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평가등급,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미리 받아야함
- 지정추천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사본),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생산업체별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예상물량 관련 증빙서),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

신청 서류

처리 절차



궁금해요! 중기씨 Q&A



Q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A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대기업과 수입 유통업체를 제외한 국내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경쟁 입찰로 하여 중소기업자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2-481-4546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2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 등 16종)을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공공기관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하며, 해당 기관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 ('14) 2.62조원, ('15) 3.11조원, ('16) 3.70조원, ('17) 4.50조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16종
-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S,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지정 물품, 성능인증,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녹색인증제품,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품목, 개발선정품, 성과공유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ICT 융합품질인증제품, 산업융합적합성인증제품,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지원 내용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물품, NEP, NET, GS, 구매조건부 R&D 사업제품·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제품 등 8종)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 가능
- 지원대상 16종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선구매요청을 할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요청한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

처리 절차



▶ 우선구매요청은 공공구매정보망 이용(www.smpp.go.kr)

궁금해요! 중기씨 Q&A



- Q** 성능인증(EPC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A 중소기업부가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의 품질과 생산 이행능력을 증명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구매 가능하도록 인증하는 제도
- Q** GS(Good Software / 우수소프트웨어)

A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수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써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됨
- Q** 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인증)

A 기술표준원이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 Q**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

A 기술표준원이 제품기술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 Q** 우수조달물품

A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신기술, 우수품질 제품을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이 해당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가능함
- Q**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A 50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우수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되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함
- Q** 구매조건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 개발에 성공제품

A 제품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R&D 사업으로 중소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임. 공공기관이 구입할 수 있는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임
- Q** 녹색인증대상제품

A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증해주는 제도로써 산업부 산하 녹색인증사무국에서 인증 및 관리 추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됨
*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

관할지역 중소기업청

소 속	연락처	소 속	연락처
서울	02-2110-6329	대전·충남	042-865-6155
부산	051-601-5124	울산	052-210-0044
대구·경북	053-659-2233	강원	033-260-1641
광주·전남	062-360-9141	충북	043-230-5370
경기	031-201-6934	전북	063-210-6481
인천	032-450-1134	경남	055-268-2543

기술개발제품 인증기관

NEP,NET (과학기술)	국가기술표준원	043-870-5581
NET(교통)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044-201-3818
NET(건설)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9
NET(보건)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71
GS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34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조달청	070-4056-7525
NET(환경)	환경부(환경경제통계과)	044-201-6672
NET(방재)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녹색인증	녹색인증 사무국	02-6009-3981
우수산업디자인 상품	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102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문의처

3-3. 성능인증제도

|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합니다. (성능인증 취득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대상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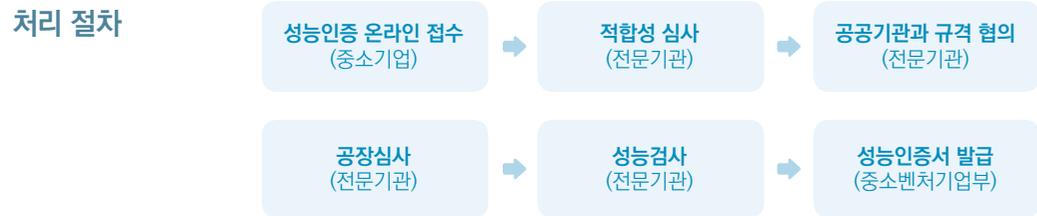
지원 규모 발급건수 : ('15) 439건 → ('16) 460건
 * 성능인증 발급은 신규, 규격추가, 연장신청, 법인정보 변경 등으로 나뉘며 해당 건수는 신청 일자 기준, 신규발급, 규격추가, 연장신청 건수를 포함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20종
 * NET, 신뢰성인증제품, NEP, 특허제품, 실용신안제품,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제품 등이며 대상품목의 상세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

지원 내용 ● 공공기관은 성능인증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신청·접수 신청방법, 신청기간, 심사·평가 주요내용, 처리기간 등 기재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공장소재지 기준으로 관할지방청 신청

제출 서류 ● 필수 첨부서류 : 성능인증 신청서, 성능인증 제품 규격서, 신청근거서류(특허증 등)



* 적합성심사 및 성능검사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처리

궁금해요! 중기씨 Q&A



- Q** 성능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A 성능인증은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2개월(적합성심사, 성능검사 기간 포함) 정도 소요됩니다.

한국산학연합회 성능인증지원팀(042-720-3340)

소 속	연 락 처	소 속	연 락 처
서울	02-2110-6322	울산	052-210-0044
부산	051-601-5145	강원	033-260-1642
대구·경북	053-659-2506	충북	043-230-5334
광주·전남	062-360-9160	전북	063-210-6441
경기	031-201-6974	경남	055-268-2564
인천	032-450-1175	제주시험연구센터	064-723-2101
대전·충남	042-865-6156		

문의처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4. 중소기업 마케팅역량강화

|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마케팅역량 강화 |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역량강화 프로그램(마케팅·브랜드·홍보)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60개 기업 내외(예산 35억원)
* '18년 지원현황 : 77개 기업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사업성,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기업
- * 국내 제조업 중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 단, 홍보의 경우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는 '광고사전심의 규정 /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결정(심의비용 지원 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① 1차 식품, 주류,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기업형 의료기기, 수입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지원 내용

- 자율선택형 바우처 사업으로서, 참여기업의 희망에 의한 마케팅 지원
 -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제품기획부터 제조·생산 관련분야 및 소비자 타겟설정 등 쏘분야 『업체 맞춤형 데이터』제공
 - (마케팅전략 수립) 유통채널MD(바이어) 및 마케팅 전문가의 코칭을 통한 기업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 (제품개선) 마케팅전략 수립과 연계하여 상품성 향상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성능 향상·디자인 개발·품질 개선 등 지원 다양한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전략 수립 지원
 - (브랜드개발 지원)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개발, 브랜드 중장기적 비전과 발전 전략 및 콘셉트 수립·분석 등 지원
 - (매체홍보) 방송매체, 온라인매체, 인쇄매체, 옥외매체 등 중소기업 홍보 지원
 - * 상기 홍보매체 외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매체 또는 참여기업이 희망하는 매체의 경우 활용 가능
 - * 단, 예산 등 사정에 의해 지원카테고리 변동 가능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빅데이터 분석·활용 카테고리』신설
* 소비자 타겟설정 등 정확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지원 카테고리 추가

신청·접수

'19년 1월~3월. 3개월간 모집(일정변동 가능)
● 아임스타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 평가 및 선정방법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선정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확약서 등 포함),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임가공계약서), 제품 설명서, 각종 제품 관련 증명서 등

처리 절차



* 단, 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 가능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44, 9346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2-481-8950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9년 지원시책」참조

궁금해요! 중기씨 Q&A

Q 식품도 지원 가능한가요?

A 1차 농·수산물에는 지원 불가하고 2차 가공식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업체는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품제조 허가나 신고를 필한 제품으로 냉장(냉동)식품이거나 일정기간 이상 상온 보관이 용이한 가공식품으로 정부공인인증(HACCP 등)을 받은 제품, 또는 각종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택1)

* 가공식품군 : 과자류, 면류, 음료류, 즉석조리식품, 통조림, 견과류

* 가공식품 추가 제출서류 : ① 영업허가신고대장, ② 품목제조신고대장, ③ 정부 공인 품질인증 관련 서류 또는 시험성적서(유해성 등 시험결과 서류)

Q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나요?

A 희망하는 사업은 모두 선택가능합니다. 단, '제품개선'의 경우 '마케팅전략 수립'을 지원한 기업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3-5. 정책매장 운영

| 중소기업제품의 시장검증과 유통망 연계 지원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인 '정책매장(아임소핑)'을 통해 창업 및 우수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의 시장검증과 유통망 연계 지원

지원 규모 2,400개 업체 정책매장(아임소핑) 입점(예산 31억원)

지원 대상 상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및 그 상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뛰어나 시장에서 잘 판매될 수 있는 우수중소기업의 소비재 완제품

* 규모 및 업태 : 중소기업(제조 및 유통사)

* 생산지 : 국내 제조 및 OEM(국내 중소기업 원천기술 보유) 표기제품

지원이 안되는 기업

- ① 대기업, 수입제품, 1차식품 등 제외
- * 단, 선정심사 시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점 가능

입점상품 선정시 우대

- 마케팅 첫걸음기업 및 마케팅역량강화사업 완료기업 중 우수 평가기업
- 지원기관(지방중기청, 기정원, TIPS, 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추천

지원 내용

- 자체 판매장 개설이 어렵거나 신상품의 신규 시장진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판매 공간 제공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독립매장 또는 샵인샵 방식으로 매장 운영하며 전시판매를 위한 인테리어 제공, 판매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판촉·홍보
- 국내외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개최, 다양한 기획전 및 판매행사 등을 통해 유통망 진출 및 판매성과 제고

신청·접수

- 수시모집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내용

- 적합성, 상품성, 마케팅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입점제품 선정

처리 절차

- 신청업체 입점 선정위원회 : 격월 선정(필요 시 수시 개최)



궁금해요! 중기씨 Q&A



Q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은 입점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선정된 업체는 해당 판매장 담당자가 유선 또는 E-MAIL을 통해 입점에 필요한 서류안내 및 매장입점에 대한 일정(상품입고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722, 9723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2-481-8950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중소기업 정책정보」코너 참조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6. 공영홈쇼핑(아임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 중소기업 및 농축수산물 전용 TV홈쇼핑 |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위주로 100% 방송 편성하고 TV홈쇼핑 업계 최저 판매수수료율 20% 적용으로 중소기업인과 농어민의 홈쇼핑 시장개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약 3,700개 제품

지원 대상 중소기업 제품, 국내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지원이 안되는 기업

- ① 대기업, 중견기업 및 해외기업이 국내외 중소기업에 위탁생산(OEM : 주문자 상표부착 / , ODM : 제조자 생산개발)한 제품
- ② 제조업체의 해외법인에서 생산하는 경우
- ③ 상품기획 후 해외에서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지원 내용

- 홈쇼핑 입점 판매수수료율 : 평균 20%
- 창업·R&D 등 창의혁신제품, 벤처·이노비즈 신제품, 6차산업화제품 등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은 사업화 우수제품 판매·홍보시 우대

신청·접수 연중

- 공영홈쇼핑 접속(www.gongyoungshop.kr) → 물하단 “입점안내”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신상품 기술서, 회사소개서, 특허·인증 등 증빙서류

처리 절차



04 수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BLOCK TALK!

문의처

공영홈쇼핑 입점안내 : 02-6350-8888~9

공영홈쇼핑 온라인 쇼핑몰(www.gongyoungshop.kr) “입점안내”에서 신청·접수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4-1. 수출바우처

| 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중소기업 수출 규모별(스타트업,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수출 전 과정에 이르는 마케팅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660여개사(전체 예산 985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세부사업명	예산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한도
스타트업	40억원	130개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창업 7년 이내 해외진출 희망 스타트업	최대 3,000만원
내수기업	201억원	746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0'인 내수 중소기업	최대 3,000만원
수출초보	158억원	584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3,000만원
수출유망	140억원	311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10~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5,000만원
수출성장	346억원	691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100~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8,000만원
글로벌강소	100억원	200개사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이고 매출액 100~1,000억원인 중소기업	최대 1억
합 계	985억원	2,662개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①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②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계의 수출바우처를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③ 신청 마감일 현재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성공패키지, 아시아하이웨이,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등)에 참여중인 기업
 - 단, 공고 시 예외로 정한 별도 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지원 내용

- 브랜드개발, 외국어 포장 디자인, 홍보·광고, 전시회, 인증 등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있는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며, 서비스 비용의 최대 70% 지원 (VAT 별도,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 * 기업 매출액에 따른 지원 비율 : (100억 미만) 70%, (100억~300억 미만) 60%, (300억 이상) 50%
-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지원영역	지원항목
디자인개발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등
홍보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조사/일반 컨설팅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국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 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통번역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해외규격인증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시험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험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CI 및 BI 개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 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지원 방식

- 수출바우처사이트(www.exportvoucher.com)를 활용, 디자인개발, 시장조사, 수출전략, 전시회, 인증 등 수출준비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 바우처 :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

신청·접수

- '18.12월, '19.5월(예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현장평가(글로벌 역량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글로벌 역량평가 :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공통역량 등 5개 분야 등을 평가 (고용영향평가 반영)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 운영지침 게시

처리 절차



문의처

구분	전화	주소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1357	-
수출바우처지원센터	055-752-8580	www.exportvoucher.com

궁금해요! 중기씨 Q&A



- Q**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나요?
A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 Q** 동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내용을 어떻게 활용가능한가요?
A 동 사업 선정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전략컨설팅,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통번역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서비스를 수행기관을 통해 활용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여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내용 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Q** 수출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진행할 때,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외에 참여기업에서 원하는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A 해외전시회, 해외규격인증, 해외홍보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수행기관 등록은 수시로 이루어 지므로 기업이 원하는 수행기관이 있을 경우 등록된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4-2. 수출컨소시엄 사업

| 품목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 |

동일 유사업종 중소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체결까지 사전 사후 현장밀착 지원을 통한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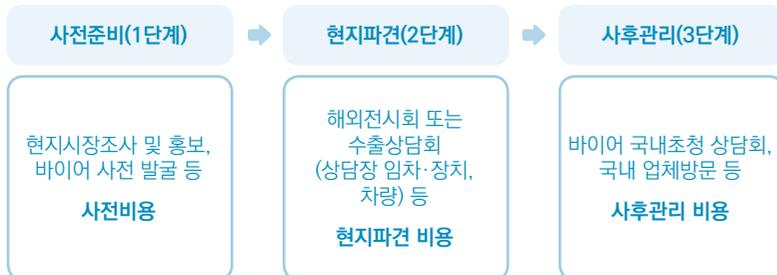
지원 규모 약 180개 컨소시엄 내외, 155.5억원
* '18년 지원현황 : 61개 컨소시엄, 총 60억원 지원

지원 대상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수출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①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경우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③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④ 휴·폐업중인 경우

- 지원 내용**
- 수출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비율 : 사전준비 70~90%, 현지파견 50~90%, 사후관리 70~90%



신청·접수

- (온라인)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을 통한 신청
 - 주관단체 :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지원사업→주관단체→참가신청"
 - 참여기업 :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사업정보→수출컨소시엄→참가신청"
- (오프라인) 사업모집공고 신청서식 및 관련 붙임서류 우편 제출
 - 주관단체
 - * 전문업종 수출컨소시엄 :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
 - *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 : 각 지방청으로 제출
 - 참여기업 : 각 세부사업의 주관단체로 제출

제출 서류

- (주관단체)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영계획서 등 (사업공고 참조)
- (참여기업)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 실적 등 각 주관단체별 요구 자료

처리 절차

- 전체일정



- 참여기업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 02-2124-3291~6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www.sme-expo.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4-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인증 및 시험비용 지원 |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CFDA, NRTL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530여개 사, 전체 예산 106.5억원
* 18년 지원현황 : 530여개 사, 총 106.5억원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①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③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④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⑤ 동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⑥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단,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

유의사항 등

- 신청업체가 인증획득 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거친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 기재된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컨설팅기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함
- 신남방·신북방국가, 중국 인증의 경우 인증 신청 건수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기업당 1억원 한도로 총 인증획득소요비용의 50% 또는 70%이내 지원
* 전년도 매출액기준 30억원 이하 기업 : 70% 지원, 30억원 초과 기업 : 50% 지원

신청·접수

구분	1차	2차	3차
접수	2월	6월	9월

- * 온라인 접수(www.exportcenter.go.kr) 후 관리기관 평가, 선정위원회 선정결과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획득 후 완료보고에 따라 지원금 지급
- * 자세한 일정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주요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조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전년도 재무제표증명원(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시험·인증기관의 접수증 또는 견적서(청구서) 1부 - 시험+인증비용이 1건당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필수 제출

(선택 서류)

- 시험·인증기관의 접수증 또는 견적서(청구서) 1부 - 시험+인증비용이 1건당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선택 제출 (제출 시 평가 점수 반영)
- 해외 특허, 상표 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 포함)
- 현재 보유중인 해외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만 제출)
- 수출전담인력(경영주 포함)의 수출 또는 해외인증 교육 수료증, 자격증, 학과 졸업증, 회사 조직도 및 인원현황표 1부
- 해외전사회 참여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 해당국가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1부.
- 외국어카다로그 1부.
- 여성기업 확인서 1부.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기부	-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고
신청서 접수	관리기관	- 온라인 신청 시 신청기업 본점 소재지 지역을 선택하여 접수
신청업체 평가	관리기관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지원대상업체 선정	지방청 (선정위원회)	- 지원대상 업체 선정(지원금 조정)
협약체결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참여기업 협약 체결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건설당기관)	- 인증신청, 제품시험, 공장심사 실시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관리기관	- 과제추진 상황 및 비용지출 확인 - 인증획득 가능성 점검 등
완료보고	참여기업	- 인증획득 여부 및 지원성과 등 보고
인증사실 확인 출연금 지급	관리기관	- 인증사실확인 - 정부출연금 정산 지급



관리기관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 전화 : 02-2164-0172~8, FAX : 02-507-8118, E-mail : mail@ktr.or.kr
 * 사이트 : www.exportcenter.go.kr

4-4.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자금·보증·해외마케팅 지원시 우대 |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지원기관의 해외마케팅, 수출금융·보증 등 우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 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기업이 참여 할 수 있으며, 중기부,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20개 수출지원유관기관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1,000개사 내외(상·하반기 2회 선정)
 * '17년 선정현황 : 771개사 선정 '18년 1,056개사 선정

지원 대상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불입1 참조)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기업(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①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없는 기업)
-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③ 휴·폐업중인 업체
- ④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 받고, 그 형 집행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 ⑤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 ⑥ 기타 사업공고시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내용

- (해외마케팅 지원참여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시 우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 (금융 및 보증지원)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를 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기타)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국외 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전자상거래 맞춤형 무료컨설팅 등

신청·접수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심사·평가 주요내용

- 수출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평가, 혁신성 등
-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을 위한 별도 평가기준 마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평가기준 비교〉

제조업 평가기준		서비스업 평가기준	
수출신장유망성 6개 항목	45점	수출신장유망성 3개 항목	35점
수출활동수행능력 3개 항목	15점	수출활동수행능력 3개 항목	15점
기술성 3개 항목	15점	서비스제공 능력 5개 항목	25점
재무평가 4개 항목	20점	재무평가 4개 항목	20점
혁신평가 1개 항목	5점	혁신평가 1개 항목	5점

제출 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인터넷 접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인터넷 접수), 전년도 및 신청년도의 수출실적증명원(현장 확인), 전년도 재무제표(현장 확인)

처리 절차



중소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 042-481-1656

문의처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씨 Q&A



- Q**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좋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사업참여시 가점 또는 우대지원을 받으며, 시중 은행을 통해서도 각종 수수료 및 대출금리 인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수출유망중소기업은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A 지정 후 2년동안 유효하며, 4회에 한합니다. 다만, 수출증가율이 우수한 경우에 한해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Q**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18년 하반기 부터 일부 사행성 업종을 모든 업종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BLOCK TALK 
산단커뮤니티_블록톡

인천광역시 지원사업

01

인천시

02

남동구

03

강화군

04

인천상공회의소

05

(재)신용보증재단

06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07

인천광역시 지자체별 지원사업

2019 인천기업 지원정책 모아모아
기업이 웃는 날까지 정책들고 직접 찾아가는 블록톡!

01

인천시

인천광역시 지원사업
BLOCK TALK!

1-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지원으로 안정된 기업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지원 규모 : 9,000억원 (은행자금 협조용자)
- 지원 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등
- 지원 조건 및 한도

구분	지원 대상	지원한도	지원 내역	용자기간		
일반지원	일반기업	3억원	이차보전(기본지원)	1, 2, 3년 ¹⁾		
	우대기업	FTA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대 전략산업영위기업,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5억원		이차보전(기본+우대지원율 0.5%)	
		유망중소기업,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10억원		이차보전(기본+우대지원율 0.5%)	
		비전기업	20억원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18년 수상자부터 적용)	30억원		이차보전(기본+우대지원율 0.55%)	
		여성기업	5억원			
		장애인기업	5억원			
산업확충기업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2천만원	이차보전(기본+우대지원율 0.7%)	4년 ²⁾		
	우리시 전입기업	30억원	이차보전(기본+우대지원율 0.5%)			
	강화공단,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5억원	이차보전(기본+추가지원율 0.5%)			
	서운산단 입주기업	15억원				
수출기업	수출계약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10억원	재해기업	10억원	이차보전(기본+추가지원율 0.2%) * 은행 금리우대 별도	6개월, 1년 ³⁾
목적성지원	창조경제혁신기업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20억원	이차보전(기본+추가지원율 0.5%)	1, 2, 3년 ¹⁾	
	고성장기업 I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20억원	이차보전(기본+추가지원율 0.5%)		
	고성장기업 II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20억원	이차보전(기본+추가지원율 0.3%)		
	고용창출기업 I	3개년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	20-50억원	이차보전(기본+추가지원율 1.0%)		
	고용창출기업 II	매출액 100억원(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기업이며, 3개년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20-50억원	이차보전(기본+추가지원율 0.5%)		
	고용창출기업 III	시 또는 정부 선정 일자리창출우수기업	20-50억원			
	고용창출기업 IV	신청일기준 직전 1년간 고용증가 10명 이상	20-50억원			
	기술창업기업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을 지원받는 기업	5억원	보증료 지원 (보증수수료 1.0% 이내 우대 및 보증료 환급)		3년 ⁴⁾

1) 1~3년 : 1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6월 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
 2) 4년 : 1년 거치 36개월 균등 분할상환, 48개월 균등 분할상환
 3) 6개월, 1년 : 6개월 만기 일시상환, 1년 만기 일시상환 4) 3년 : 3년 만기 일시상환

2018년 실적

- 지원 결정 : 1,281개 업체, 6,430억원

2019년 계획

- 신청 기간 : 분기별/상시 접수 (접수개시 : '19. 1. 14.)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기업정책팀 ☎ 032-440-4252~6)
 인천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 ☎ 032-260-0621~4)

1-2.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저리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지원 규모 : 32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 지원 대상 : 제조업, 벤처기업 등
- 지원 조건 및 한도

지원사업	구분	업체당	대출금리	용자기간
		용자한도		
구조고도화자금	자동화	10억원 (연계운전 2억원)	2.80% (변동)	- 시설 : 8년 (3년 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연계운전 : 3년 (1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소기업육성	4억원 (연계운전 1억원)		
기업시설자금	공장확보 (구조고도화)	10억원	- 시설 : 8년 (3년 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운전 : 5년 (2년 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산단환경 개선사업)	10억원		
	기업부설 연구소설치	10억원		
	국가산단 주차장설치	5억원		
	벤처창업자금	7억원 (운전 3억원)	2.30% (고정)	

2018년 실적

- 지원 결정 : 111개 업체, 535억원

2019년 계획

- 신청 기간 : '19. 1. 14.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기대효과

- 공장확보 및 설비 투자 지원을 통한 기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성 향상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기업정책팀 ☎ 032-440-4252~6)
 인천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 ☎ 032-260-0621~4)

1-3. 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 산업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양성
- ◆ 재해기업의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지원 규모 : 23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 지원 대상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제조업 등
 - 지원 조건 및 한도

지원사업	업체당 용자한도	대출금리	상환기간
지식산업센터건설	200억원	2.80% (변동)	8년 (3년 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재해기업	2억원	0% (고정)	5년 (2년 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 2018년 실적**
- 지원 결정 : 25개 업체, 42억원

- 2019년 계획**
- 신청 기간 : '19. 1. 14.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 기대효과**
-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산단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해기업의 복구 지원 강화를 통한 산업기반 고도화

1-4.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금 지원

- ◆ 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 정신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의거 공제 사업기금으로부터 신용 대출시 발생하는 이차 일부를 인천시에서 지원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 사업개요**
- 목적 :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사업기금 단기운영 자금대출 시 지급해야 할 이차 중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기간 : 2019. 1. 1 ~ 12. 31
 - 지원규모 : 100백만원
 - 신청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지원자격 : 공제사업기금에 가입 후 4개월 이상 부금을 납입한 업체
 - 지원내용 : 대출이자 1.5%(1년 범위 이내 지원)
※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에 지원이 마감될 수 있음

- 2018년 실적**
- 가입현황 : 784개 중소기업·소상공인
 - 대출현황 : 140개사 287억원, 이차보전금 84백만원 지원

- 2019년 계획**
- 지원업체 : 200개 업체, 업체당 약 50만원 혜택
 - 지원계획 : 단기운영자금 대출이자 지원

- 기대효과**
- 신용 및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 도모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기업정책팀 (☎ 032-440-4252~6)
인천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 (☎ 032-260-0621~4)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기업정책팀 (☎ 032-440-4252~6)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032-437-8706)

1-5.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증지원

- ◆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보증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사업개요

- 보증규모 : 6,250억원
- 대 상 :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8억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 금융기관 : 재단과 보증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 보증요율 : 연 2%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지원절차
 - 지원신청(업체) → 심사(재단) → 보증서발급(재단) → 대출(은행)

2018년 실적

- 27,552건 / 6,090억원

2019년 계획

- 신청접수 : '19. 1. ~ 보증 한도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대효과

- 300만 도시 인천의 신성장동력 발굴
- 소기업·소상공인과 재단의 상생 발전
- 건전보증 공급을 통한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안정 도모

1-6.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세기업 보증지원 확대

- ◆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개요

-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원절차
 - 지원신청(업체) → 심사(재단) → 보증서발급(재단) → 대출(은행)

2018년 실적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희망키움 협약보증 : 1,145건 / 300억원
- 한국GM 피해기업지원 특례보증 : 1,025건 / 237억원
-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 : 2,978건 / 360억원

2019년 계획

-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햇살론)
 - 대상기업 : 저신용자 및 저소득자
 - 보증한도 : 업체당 2천 ~ 5천만원 이내
-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 대상기업 : 학원, 수리점등 개인서비스업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이내, 4년간
-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 대상기업 : 인천시 정비사업 구역내 소기업·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당 2천만원이내, 4년간

기대효과

- 제도권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 및 생활 안정 도모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의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4226~8)
 인천신용보증재단 영업관리부 ☎ 032-260-1542, 1549)



문의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4226~8)
 인천신용보증재단 영업관리부 ☎ 032-260-1542, 1549)

1-7. 청·장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금융지원사업 추진

- ◆ 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에 적극 부응
-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 ◆ 종합적인 창업 금융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사업개요

- 창업자금 보증지원 업무
-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정보제공 업무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금·보조금 안내 및 추천 업무
- 창업투자펀드 소개 및 매칭 업무
- 창업지원 컨설팅 및 창업금융상품 종합 안내 업무

2018년 실적

- 인천시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 235건 / 58억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 685건 / 254억원
- 홀로서기 창업금융지원 특화보증 : 597건 / 166억원

2019년 계획

-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 대상기업 : 신규채용기업, 고용유지기업, 제조업영위기업 등
 - 보증한도 : 업체당 1억원이내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 대상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등
 - 보증한도 : 업체당 1억원이내
- 청년창업 지원 특례보증
 - 대상기업 :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후 5년이내 기업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이내

기대효과

- 적시의 금융지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창업생태계 육성
- 강소기업 육성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문의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6~8)
 인천신용보증재단 영업관리부(☎ 032-260-1542, 1549)

1-8.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육성 및 지원

- ◆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

사업개요

- 선정목표 : 5개사
- 지원기간 : 5년
- 선정대상
 - 종업원 50인 이상, 매출액 400억원 이상 (*비제조업 200억원 이상), 업력 5년 이상
- 주요 지원시책
 - 중소기업육성자금(최대 30억원) 및 우대금리 적용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 시책사업 우선지원 및 가점부여

2018년 실적

- 중견성장 사다리기업 선정 : ㈜카네비컴 등 7개사

2019년 계획

- 2019. 3월 : 계획수립
- 2019. 4월 : 모집공고
- 2019. 4월~5월 : 신청접수
- 2019. 6월 : 서류심사(1차)
- 2019. 7월~8월 : 현장심사(2차)
- 2019. 9월 :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19. 11월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인증서 수여

기대효과

- 인천산업 성장의 주축기업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극대화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공업지원팀(☎ 032-440-4298)
 인천테크노파크 기업SOS팀(☎ 032-260-0612~3)

1-9. 비전기업 선정 및 지원

◆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기술과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강한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우리 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선정목표 : 15개사(재선정 포함)
- 지원기간 : 5년
- 선정대상
 - 종업원 20인 이상, 매출액 80억 초과 ~ 400억 미만 (*비제조업 40억 초과~200억 미만), 업력 3년 이상
- 주요 지원시책
 - 중소기업육성자금(최대 20억원) 및 우대금리 적용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 시책사업 우선지원 및 가점부여
 - (사)인천비전기업협회 사업 지원

2018년 실적

- 선정 : (주)레이텍스 등 29개 업체(재선정 19개사 포함)

2019년 계획

- 2019. 3월 : 계획수립
- 2019. 4월 : 모집공고
- 2019. 4월~5월 : 신청접수
- 2019. 6월 : 서류심사(1차)
- 2019. 7월~8월 : 현장심사(2차)
- 2019. 9월 :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19. 11월 : 비전기업 인증서 수여

기대효과

- 기업의 신뢰도 향상 및 성장기반 구축

1-10.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우리 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선정목표 : 45개사(재선정 포함)
- 지원기간 : 5년
- 선정대상
 - 종업원 10인 이상, 매출액 20억 이상 ~ 80억 미만 (*비제조업 10억 초과~40억 미만), 업력 2년 이상
- 주요 지원시책
 - 중소기업육성자금(최대 10억원) 및 우대금리 적용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 시책사업 우선지원 및 가점부여
 - (사)인천유망중소기업연합회 사업 지원

2018년 실적

- 선정 : (주)이피아이티 등 50개사(재선정 14개사 포함)

2019년 계획

- 2019. 3월 : 계획수립
- 2019. 4월 : 모집공고
- 2019. 4월~5월 : 신청접수
- 2019. 6월 : 서류심사(1차)
- 2019. 7월~8월 : 현장심사(2차)
- 2019. 9월 :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19. 11월 :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

기대효과

- 기업의 신뢰도 향상 및 성장기반 구축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공업지원팀 ☎ 032-440-4298
인천테크노파크 기업SOS팀 ☎ 032-260-0612~3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공업지원팀 ☎ 032-440-4298
인천테크노파크 기업SOS팀 ☎ 032-260-0612~3

1-11.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시스템(BizOK) 사이트 운영

◆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시스템 운영으로 온라인 신청접수 및 맞춤형 기업지원 정보 제공

사업개요

〈인천시 BizOK 사이트 ⇒ <http://bizok.incheon.go.kr>〉

-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사업정보 및 기업지원 정책을 통합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 기관별로 진행되던 사업접수를 온라인 신청, 접수 시스템으로 통합·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편리성 및 효율성 향상
- 온라인 접수 및 기업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성과 분석 등 기업정보 구축으로 향후 기업지원 사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도록 모바일 기반에서도 편리하게 기업지원 정보 제공

2018년 실적

- 운영실적 : 누적 지원사업 815건, 회원가입 10,478개사, 월평균 14,265명 방문
- 기술위원 관리기능 및 사업신청 입력폼 등 기술지원단 기능개선 완료
- 중소기업제품(마켓 입점) 홍보 강화를 위한 제품홍보 페이지 구축 완료

2019년 계획

- 지원사업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SMS 등을 활용하여 각종 사업정보 지속적으로 실시간 제공 및 시스템/디자인 개선
- 중소기업제품 홍보관에 일반기업 제품도 입점 추진

기대효과

- 기업지원 정책정보, 생산제품 홍보, 마케팅·판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신속 제공
- 인천시 우수기업관 운영 등으로 기업 편의 도모 및 앞으로의 기업지원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기업정책팀 (☎ 032-440-4252~6)

인천테크노파크 BIZ-OK팀 (☎ 032-260-0741~6)

1-12.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스마트 공장 도입 지원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사업개요

세부 사업명	사업비(시비)	지원업체	인천시 지원조건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1,680백만원	80개	기업부담 금액의 20% (최대 2천만원)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300백만원	30개	기업부담 금액의 10% (최대 1천만원)
계	1,980백만원	110개	-

- 지원분야
 - 공장운영시스템지원(ERP, PLM, MES, SCM), ICT기반제조기술인 제조자동화, 공정시뮬레이션 등

2018년 실적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11개 업체(20억원)

2019년 계획

- 2019. 3. : (재)인천테크노파크와 위수탁 계약
- 2019. 4. : 스마트공장 지원 대상 공모
- 2019. 5. ~ 11. : 지원사업 시행 및 평가
- 2019. 12. :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제조업 생산공정 개편
- 제조업 구조고도화 촉진 및 중소기업 제조 역량 혁신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구조고도화팀(☎ 032-440-4287)

인천테크노파크 기업SOS센터(☎ 032-260-0613)

1-13. 스마트공장 교육 및 진단컨설팅 지원 사업

◆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기업 맞춤형 진단 컨설팅 지원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추진 역량 강화

사업개요

- 사업비 : 80백만원 (시비 100%)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 시비 100% 지원사업
- 지원분야

세부 사업명	주요내용
스마트공장 교육	실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 및 실무교육
세미나 및 워크숍	경영진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이해, 추진전략 및 사업화전망 교육
사전 진단컨설팅	중소기업에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방안 컨설팅

2018년 실적

- 교육 : 2회 60명
- 세미나 : 3회 310명
- 사전 진단컨설팅 : 25개사

2019년 계획

- 2019. 2. : (재)인천테크노파크와 위수탁 계약
- 2019. 4.4.~4.5. : 인력양성 임직원교육 (중소기업진흥공단, 50명)
- 2019. 6. : 세미나 개최
- 2019. 6. ~ 9. : 컨설팅(25개 사) 추진

기대효과

- 스마트공장에 대한 낮은 인지도 개선
- 기업 맞춤형 단계별 스마트공장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 초기 사업비 부담 완화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구조고도화팀 ☎ 032-440-4287

인천테크노파크 기업SOS센터 ☎ 032-260-0613

1-14.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사업

◆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재산 중심의 기술성장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산업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을 강화하여 기술경쟁력 제고와 기술개발에 따른 권리 확보 및 보호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명 :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2006년부터 매년사업)
- 사업비 : 3,011백만원(국비1,164, 시비1,437, 구비410)
- 주최 : 인천광역시, 군·구,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 주관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
- 사업내용
 - 국·내외 특허출원 및 특허정보종합지원, 디자인권리화 사업지원, 브랜드권리화 사업 및 지역지식재산권 창출지원 등

2018년 실적

- 산업지식재산(특허·상표·디자인) 지원 : 1,329건
- 지식재산 권리화(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지원 : 334건
-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및 선행기술조사 등 : 655건
- 지역지식재산 창출기반 인프라 구축 : 339건

2019년 계획

- 지원내용
 - 지식재산 권리화, 선행기술조사, 특허컨설팅 등
 - 중소기업 산업지식재산 단계별 지원 (중소기업 IP 경영 지원 → 글로벌 IP Star기업 육성)
 - 산업지식재산(특허·상표·디자인) 지원

기대효과

- 중소기업 특허보유로 기술경쟁력 강화
-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지원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 지식재산 사업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융합기술팀 ☎ 032-440-4262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 032-810-2872-2882

1-15.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기술지도로 문제해결

사업개요

- 사업명 :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 사업기간 : 2019. 1. ~ 12.(매년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 지원분야 : 7개 분야(기술개발, 디자인, 품질관리, 자동화, 정보화, 마케팅, 경영 컨설팅)
- 사업내용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30일 범위내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기술지도
- 사업주관 :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사업시행 : (재)인천테크노파크

2018년 실적

- 사업비 : 340백만원(시비 150, 구비 190)
- 사업실적 : 84개사 기술지도 실시 및 성과분석

2019년 계획

- 사업비 : 328백만원(시비 150, 구비 178)
- 지원목표 : 80개사
- 지도분야 : 7개 분야
- 추진계획
 - 2019. 2. : 1차 사업 모집 및 기술지원단 운영
 - 2019. 4. : 2차 사업 모집 및 기술지원단 운영

기대효과

-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로 경영능력 및 기술 경쟁력 강화
- 생산성 및 매출 증가, 불량률 감소, 신기술 개발지도로 대외 경쟁력 강화

1-16.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

◆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기업 및 기관과의 기술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향상과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명 :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
- 사업기간 : 2019. 1. ~ 12.(매년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 지원분야 : 해외기술교류 및 선진생산기술도입 지원
- 사업내용 : 관내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교류 실시
- 사업주관 : 인천광역시
- 사업시행 : (재)인천테크노파크

2018년 실적

- 사업비 : 200백만원
- 지원실적 : 48개사 지원
 - 해외기술교류 4회(5개국 42개사 지원)
 - 선진생산기술도입 1회(6개사 지원)

2019년 계획

- 사업비 : 200백만원
- 추진계획 : 해외기술교류 4회, 선진생산기술도입 1회
 - 2019년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
 - ※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기술교류단 운영(교류국가는 변동 될 수 있음)
 - 선진생산기술도입 수시 실시

기대효과

- 우수기술 발굴을 통한 해외 우수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기술교류로 인천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강화
- 해외 선진생산 및 관리기술을 도입, 적용하여 생산현장에 지원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융합기술팀 ☎ 032-440-4263
인천테크노파크 기업SOS센터 ☎ 032-260-0616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융합기술팀 ☎ 032-440-4263
인천테크노파크 기업SOS센터 ☎ 032-260-0612

1-17.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원

- ◆ 지역의 개발된 기술을 발굴, 유통, 중개, 알선 등을 통해 기술이전 지원
-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등 지역경제발전 선도

사업개요

- 사업명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원
- 사업기간 : 2019. 1. ~ 12.(매년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 지원분야 : 기술발굴, 기술이전 및 도입, 기술사업화 등
- 사업내용 : 기술 중재자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및 국가간의 기술거래, 기술 이전 등 사업화 촉진
- 사업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 사업시행 : (재)인천테크노파크

2018년 실적

- 사업비 : 100백만원
- 지원실적 : 수요기술 발굴 118건, 기술이전 지원 29건, 기술사업화 지원 8건, 기업사업화 DB 162건 등

2019년 계획

- 사업비 : 100백만원
- 추진계획
 - 이론험망기술 발굴 및 지원
 - 국내외 기술이전 마케팅
 -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반구축
 - 기술이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대효과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신기술 획득 기회 부여

1-18.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지원

- ◆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3D프린팅(쾌속조형)을 활용,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개요

- 사업명 :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지원
- 사업기간 : 2019. 1. ~ 12.(매년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 지원분야 : 3D프린팅, 역설계 등 시제품 제작지원,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네트워크 운영 등
- 지원기준 : 시제품 제작비 10백만원 한도(기업부담금 20%)
- 사업주관 : 인천광역시
- 사업시행 : (재)인천테크노파크

2018년 실적

- 사업비 : 296백만원
- 지원실적 : 시제품 제작지원 83개사 212건
 - 장비구축, 전문인력양성 3회, 네트워크 구축
 - 시제품 제작지원(3D프린팅 213건, 역설계 등 2건)

2019년 계획

- 사업비 : 300백만원
- 추진계획
 - 시제품 제작지원 수시접수
 -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 네트워크 구축(세미나, 성공사례 발표 등)

기대효과

- 기업의 제품개발 기간 단축으로 인한 신제품 촉진 및 기술향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
- 신속한 정보공유 및 기술전파로 인천지역 기업의 정보 경쟁력 제고 및 시장변화에 능동적 대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융합기술팀 ☎ 032-440-4263
 인천테크노파크 기업SOS센터 ☎ 032-260-0612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융합기술팀 ☎ 032-440-4263
 인천테크노파크 서비스디자인센터 ☎ 032-260-0270

1-19. 지역혁신센터(RIC) 육성 지원

◆ 산학공동연구, 장비구축 및 활용,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등 우리시의 지역 전략산업 관련, 대학의 연구 기반 구축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3년 ~ '20년
- 1개 센터 운영지원

센터명	기간	비고
RIC	인하대 열플라즈마환경기술연구	'05 ~ '20

●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장비활용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가 실험·측정장비의 구축·운영
연구개발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 및 기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인력양성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및 산업체 요구 기술인력 배출
창업지원	신기술 창업자에 대한 공간, 기술·경영지도 등 지원
개발기술사업화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대한 사업화 지원
기술이전 지도	대학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에 기술이전 및 지도

2018년 실적

- '18년 사업비 : 15백만원(전액시비)
- 수혜기업 : 26개사
- 과제연구 2건, 지적재산권 4건, 기술이전·지도 3건, 장비활용 1,966건

2019년 계획

- '19년 사업비 : 15백만원(전액시비)
- 주요사업내용
 - 센터 내 장비구축 및 활용지원
 -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등
 - 산학강좌 등 산업체 필요인력 양성

기대효과

- 지역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지역혁신센터를 육성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지원 및 연구개발 활성화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공업지원팀 ☎ 032-440-4297

1-20.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제품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공산품)

◆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제품의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개별로 참가 시 부스임대료 및 장치비를 지원 하여 판로 활성화 촉진

사업개요

- 사업비 : 20백만원
- 지원규모 : 10개사
- 지원대상 :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제품 등(공산품)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지원

2018년 실적

- 사업비 : 20백만원
- 지원업체 : 일진시팅(주) 등 13개사 지원
- 계약실적 : 27건, 614백만원

2019년 계획

- 사업비 : 20백만원
- 지원규모 : 10개사
- 지원시기 : '19.1월~11월에 개최한 전시회에 참가하고 사후에 지원
- 추진절차



기대효과

- 품질우수제품 선정 된 기계부품 등 공산품의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을 통한 판로 개척 활성화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공업지원팀 ☎ 032-440-4297
인천테크노파크 수출지원센터 ☎ 032-260-0635

1-21. 중소기업 품질경영 개선 지원사업

- ◆ 기업의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프로젝트형 과제 도출
- ◆ 전문가의 지도를 통한 현장문제 해결 및 품질경쟁력 향상 과제 해결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관내 중소기업 8개사
- 사업비 : 총 80백만원
 - 인천광역시(50%) : 40백만원
 - 참여업체(30%) : 24백만원
 - 한국표준협회(20%) : 16백만원
- 주요내용
 - 중소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 과제 2~3개 선정
 - 전체 참여기업 추진자 워크숍 등 연합 교육
 - 개별기업에 대한 현장개선 프로젝트 해결 OJT 실시
 - 지도기관 : 한국표준협회(인천지역센터)

2018년 실적

- 사업비 : 40백만원
- 지원업체 : (주)하나금속 등 8개사
- 지원효과 : 연간 130백만원 절감

2019년 계획

- 지원대상 : 8개사
- 지원기간 : 2019. 2월 ~ 10월
- 사업비 : 40백만원

기대효과

- 기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최적의 품질개선 기법 적용으로 기업별 개선과제 문제 해결
- 타 성과 벤치마킹과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공업지원팀 ☎ 032-440-4299
 한국표준협회 인천지역센터 ☎ 032-260-0265

1-22. 기업종합지원

- ◆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종합지원

사업개요

- 기업성장 지원 및 산·학·연 연계활동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산업기술혁신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유망기업 육성체제 활성화 도모

2018년 실적

- 거점기능지원사업
 - 지역중소기업 14,00여개사에 대한 기업정보 DB 구축
 - 지역 성장유망기업 사업화지원 : 63개사
 - : 국내외인증획득,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 지원, 해외판로개척, 기업애로 현장 맞춤 컨설팅 등
 - 산업별 및 기능별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운영
- 글로벌강소기업지원사업
 - 인천시 글로벌강소기업 선정 : 15개사
 - 기업제품 홍보 등 인천시 지원 프로그램 지원

2019년 계획

- 거점기관 운영지원 사업
 - 지역 기업지원기관간 지원프로그램 연계·협력 및 기술혁신정보 교류회 운영
 - 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애로기술해결 지원
 - 지역 성장유망기업 발굴을 통한 사업화 지원(국내외인증획득, 시제품제작, 마케팅 지원, 해외판로개척 등)
- 글로벌강소기업지원사업
 - 인천시 글로벌강소기업 선정 : 15개사 내외
 - 인천시 육성 프로그램 지원 및 중앙정부 해외마케팅 사업 수주 지원

기대효과

- 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사업화로 연결하여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 지원
- 잠재력을 갖춘 중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도약



문의처

인천광역시 신성장산업과 첨단산업팀 ☎ 032-440-4207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무역진흥팀 ☎ 032-440-4284
 인천테크노파크 기업SOS센터 ☎ 032-260-0614,0618

1-23.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

- ◆ 자동차부품 관련 공동연구개발, 상품화 기술개발, 시험평가, 애로기술 지원
- ◆ 글로벌 품질향상 인력양성 및 판로 다변화 지원

사업개요

- 인천 자동차부품 기업의 설계, 해석, 시험 등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 유도 및 상품화 촉진
 - 자동차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운영
 - 전장화·경량화·모듈화 부품의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
 - 전장화·경량화·모듈화 부품의 신뢰성 시험평가 지원
 - 자동차센터 기술지원 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 강화

2018년 실적

- 지원 실적 현황
 -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지원 : 9건
 - 자동차부품 기업 현장애로기술지도 : 12건
 - 자동차부품 시험평가 지원 : 55건
 - 산·학·연·관 기술교류회 개최 : 10회
 - 글로벌 품질기술 교육과정 개최 : 7회
 - 해외 1:1수출상담회 개최 : 3회

2019년 계획

- 사업명 : 첨단자동차 전장부품기업 육성지원사업
- 목 적 : 인천 자동차부품 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매출향상 및 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 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지원 : 10건
 - 단기 기술개발 지원 : 6건
 - 기업공동 기술개발과제 지원 : 2건
 - 신뢰성 시험평가 지원 : 50건
 - 글로벌 품질기술 교육과정 개최 : 10회
 - 해외 1:1수출상담회 개최 : 3회
 - 산·학·연·관 기술교류회 개최 : 10회

기대효과

- 인천 자동차부품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경제적 파급효과 255억원, 고용창출 효과 40명 전망



인천광역시 신성장산업과 첨단산업팀 (☎ 032-440-4207)
 인천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 032-260-0811)

1-24. 바이오산업 지원

- ◆ 바이오관련 시험·분석, 공동연구개발, 개발기술 상업화, 정보지원
- ◆ 인천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바이오 기업 육성기반 강화

사업개요

- 인천바이오산업지원센터 성과활용 지원사업
 - 장비사용지원 및 애로기술지원, 현장실습형 인력양성, 인천바이오산업협의회 개최
-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구축·운영사업
 - 중소 화장품제조기업의 품질관리 지원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을 취득, 화장품 품질 검사 서비스 및 실무교육 실시
-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사업
 - 헬스케어제품(의약품, 의료기기, 기능성 화장품 및 식품 등) 개발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2018년 실적

- 인천바이오산업지원센터 성과활용 지원사업
 - 장비사용 지원 : 24개 기업(관), 250건
 - 현장실무형 인력양성 : 2회, 8명
 - 바이오산업협의회 개최 : 4회
- 화장품품질검사기관 구축·운영사업
 - 품질검사기관 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업체 컨설팅
 - 시험·검사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및 장비 검교정 완료
-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사업(11개사)
 - 인증(3건), 시제품제조(4건), 효능 및 안전성평가(4건)

2019년 계획

- 인천바이오산업지원센터 성과활용 지원사업
 - 장비사용 지원 : 26개 기업(관), 270건
 - 현장실무형 인력양성 : 2회, 8명
 - 바이오산업협의회 개최 : 4회
- 화장품품질검사기관 구축·운영사업
 - 공인시험기관 자격 취득(식약처) 및 품질검사 서비스 실시
-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사업
 - 총 16개사 제품개발 지원

기대효과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의 활성화 촉진
- 지역 내 바이오 및 화장품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인천광역시 신성장산업과 첨단산업팀(☎ 032-440-4208)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032-260-0830)

1-25.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운영

◆ SW융합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SW융합 제조업 중심 「글로벌 하드웨어 스타트업」 및 유망지식서비스 분야 우수청년기업 육성
- 사업비 : 2,197,0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사업화자금, 교육 및 멘토링, 인프라 제공, 국내외 전시회 및 네트워킹 등 성장프로그램 지원

2018년 실적

- 제2기 우수기업 27개사 발굴 및 육성 : 고용창출 120명
- Scale-up 인천, 글로벌 현지화 챌린지 운영 : 6월~12월
 - 미국진출 1차 진단(29개), 2차 선정(10개사), 3차 선정 및 멘토링/ 제품 현지화 (6개사), 미국 현지 지사 및 법인설립(4개사) 지원
- 글로벌 인재 매칭 프로그램 25개사 지원: 여름/겨울방학 기간
- 글로벌 대학 연계 창업챌린지(교육, 캠프) 개최(100여명 참석)
- 글로벌 대학 등 산학연계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3개사
- 글로벌 서포터즈 연계 현지화 4개사 지원 : '18.10월~'19.2월

2019년 계획

- 글로벌 자원(글로벌 대학, Vault 엑셀러레이터, 글로벌연구소 등)을 활용한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및 해외 현지화 프로그램 등 지원
- 스마트벤처캠퍼스(중소벤처기업부) 연계를 통한 글로벌 진출 청년 기업 육성

기대효과

-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지식서비스 분야 청년창업자의 전주기적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
-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해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내 생태공간 조성



문의처

인천광역시 신성장산업과 신성장정책팀 ☎ 032-440-3274

인천테크노파크 ICT융합본부 SW융합진흥센터 ☎ 032-714-9800

1-26. 산업간 B2B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인천시 관내 제조기업과 스타트업/SW융합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조기업의 기술혁신 아이디어 제공 및 수요처 다양화, 스타트업/SW 융합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제품양산 협력
- 사업비 : 400,000천원(시비)
- 주요내용
 - 산업간 B2B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제조-스타트업/SW융합 기업 연계 서비스(제조 및 양산, 기술혁신 등)
 -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기업의 기술 혁신 연구개발

2018년 실적

- 산업간 B2B 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모델 기획 및 플랫폼 구축
 - ※ 공단제조기업 DB 구축(기술력, 생산설비 등), 프로토타입 지원 모듈(CPU, 센터, 통신 등) 개발, 온라인 플랫폼 등
- 산업간 B2B 서비스 플랫폼 시범서비스

2019년 계획

- 산업간 B2B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확대 추진
 - 제조기업의 DB 추가 조사 및 구축(관내 제조기업 300개사)
 - 아이디어 프로토타입을 위한 모듈 개발 및 제공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데이터 기반 자동 연계 결과 도출
 - 신뢰할 수 있는 제조 파트너 연계(시제품 제작 및 양산) 서비스
 - 제품, 생산시설 등 기술혁신 연계 서비스
 - 기업 간에 기술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 공유 서비스

기대효과

- 공단 제조기업 자사제품의 혁신 연계(투자 및 기술협력) 및 다양한 거래처 확보
-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이 필요한 기업 대상으로 현 트렌드에 맞춘 제품 및 서비스 출시, 지역기업의 기술혁신 및 기술력 향상



문의처

인천광역시 신성장산업과 신성장정책팀 ☎ 032-440-3274

인천테크노파크 ICT융합본부 SW융합진흥센터 ☎ 032-714-9800

1-27. 지역SW기업 성장 지원

◆ 인천지역 SW 및 ICT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화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SW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SW·ICT기업 발굴 및 육성
- 사업비 : 100,000천원(사비)
- 사업내용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개별참가, 공동관 등)
 - 제안서 작성 및 국가 공모사업 유치 지원
 - 기업 애로사항 상담을 통한 해결방안 제공
 - 인천 ICT융합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 지역 SW·ICT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및 정책발굴

2018년 실적

- 공동마케팅 지원(NIPA 공동관 참가지원)
 - 싱가포르 정토통신 박람회(4개사), GMV 2018(2개사)
-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32개사)
- 국가 공모사업 유치지원(3개사), 기업애로상담(26건)
- 동종기업 기술교류 및 협력 세미나 개최(4회)
- 인천 ICT융합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12/6, 120여명 참석)
- SW·ICT산업 통계조사(1건), 신규 사업·정책 발굴(1건)

2019년 계획

- 국내외 유망 ICT 전시회 참가지원(14개사)
- 제안서 작성 및 국가 공모사업 유치 지원(상시)
- 동종기업 기술교류 및 협력 세미나 개최 지원(4회)
- 인천 ICT융합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12월 중)
-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사업 연계

기대효과

- 지역 SW기업의 조기 발굴 및 지원으로 지역SW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성장 기반 토대 마련
-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우수 기술 및 제품 발굴,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육성



문의처

인천광역시 신성장산업과 신성장정책팀 ☎ 032-440-3274
 인천테크노파크 ICT융합본부 ICT진흥센터 ☎ 032-260-0653

1-28. 중국 마케팅 지원

◆ 인천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지원 강화 전담 지원
 ◆ 중국의 자국보호정책 등 수출여건 악화에 대한 수출인프라 구축, 시장개척, 전시회 참가, 기술경쟁력 강화 등 토털 마케팅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한 제조업체
- 지원내용 : - 시장개척단, 유망전시회, 바이어수출상담회
 - 규격인증, 전시판매장, 온·오프라인 지원 등
- 사업비 : 900백만원
- 사업수행 : 인천상공회의소

2018년 실적

- 사업실적 : 275개사
 - 시장개척 27개사, 바이어초청상담회 127개사
 - 전시판매장 운영 24개사, 온라인 마케팅 10개사
 - 단체전시회 참가 53개사, 중국 규격인증 23개사
 - 중국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11개사

2019년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 내용
계	
시장 개척단	- 시장개척단 파견 2회(중서부 내륙지역)
우수바이어 초청상담회	- 우수바이어 초청상담회 2회(각15바이어)
위해 인천대표처 지원사업	- 이우 포스코대우샵 인천관 운영비 - 위해인천대표처 지원사업(박람회, 상담회)
1사 시장개척단(신규)	- 개별 맞춤형 시장개척단(코트라연계)
온라인 마케팅 지원	- 중국 유명 온라인마케팅 입점 지원
단체전시회 참가	- 단체전시회(부스비, 운반비 등) 참가 지원
개별전시회(신규)	- 개별 맞춤형 전시회 참가
중국 규격인증 지원	- 비관세장벽 해소 인증획득 지원
중국 수출 물류비 지원	- 중국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최대 300만원)
대만 지사화 사업	- 코트라 협업 대만 토털마케팅 지원(12개사)

기대효과

- 인천 최대시장으로 사업 다변화를 통한 중국내 신형 지역 진출로 수출판로 확대
- 국 지방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 강화로 유망 바이어 발굴 및 비즈니스 교류 확대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무역진흥팀 ☎ 032-440-4282
 인천테크노파크 수출지원센터 ☎ 032-260-0631~6

1-29. 중소기업 시장개척단 지원사업

- ◆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해외 신흥시장 및 무역거점 도시에 파견,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회 개최·지원
- ◆ 특화산업에 대한 시장개척 토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한 제조업체
- 지원내용
 - 항공료 50%지원, 상담장, 차량임차 및 통역지원
 - 바이어 섭외 및 사전 시장조사, 사후관리 지원 등
- 사업비 : 500백만원
- 사업수행 : 인천테크노파크

2018년 실적

- 시장개척단 파견 : 7회, 66개사 지원
- 특화산업 마케팅 : 3회, 70개사 지원

2019년 계획

지역		도시	업체	시기
합계			135	수시
시장 개척단	태국 전략시장개척단	방콕	20	1월
	동남아 시장개척단	자카르타, 양곤	10	2월
	남미 시장개척단	멕시코시티, 보고타	10	3월
	인도 시장개척단	뉴델리, 뭄바이	10	3월
	동남아 시장개척단	쿠알라룸푸르	10	5월
	유럽 시장개척단	이스탄불	10	7월
	글로벌챌린저(1사 무역사절단)		25	수시
특화 마케팅	온라인 B2B마케팅지원		20	수시
	화장품,자동차특화사업		20	수시

기대효과

- 신흥시장 진출 및 내수시장 선점 기회 제공
-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기여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무역진흥팀 ☎ 032-440-4283
 인천테크노파크 수출지원센터 ☎ 032-260-0631~6

1-30. 국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배양과 판로개척 지원으로 수출 및 내수시장 판로 확대에 기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관내 업체
 - ※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한 업체
-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 일부
 - 해외 전시회 전시품 운송비(편도 1CBM) 및 통역비(50%)
- 사업비 : 630백만원
- 사업수행 : 인천테크노파크

2018년 실적

- 해외 전시회 : 19회, 142개사 지원
- 국내 전시회 : 4회, 200개사 지원

2019년 계획

구분	전시회명	규모	시기	품목
합계		107	-	-
해 외 전 시 회	파나마 종합박람회	6	3월	종합품목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30	4월	종합품목
	태국 방콕식품전	6	5월	식품
	말레이시아 의료미용박람회	8	5월	의료/미용
	태국 방콕 국제포장기계전	8	6월	포장기계
	베트남 호치민기계전	8	7월	기계
	태국 방콕 라이프스타일 엑스포	6	8월	종합품목
	홍콩 메가쇼 파트1	5	10월	종합품목
	모스크바 미용박람회	8	10월	미용용품
	홍콩 추계 전자전	6	10월	전기전자
	라스베이거스 자동차부품전	6	11월	차부품
	베트남 호치민 종합박람회	10	12월	종합품목

- 국내 전시회 3회 (50개사) 지원

기대효과

- 수출업체의 해외마케팅 능력배양 및 해외판로 지원
- 시장동향 파악 기회 제공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무역진흥팀 ☎ 032-440-4283
 인천테크노파크 수출지원센터 ☎ 032-260-0631~6

1-31.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소수 특정품목의 해외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바이어 발굴 및 틈새시장 개척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관내 업체
 - ※ 공장이 인천에 소재한 업체
-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 일부
 - 전시품 운송비(편도 1CBM) 및 통역비(50%)
- 지원기준
 - 업체당 500만원 범위 내
- 사업수행 : 인천테크노파크

2018년 실적

- 지원실적 : 97개사

2019년 계획

- 지원업체 : 1개 사업, 105개사

《시, 군·구 협업사업》

- 시와 각 군·구별 출연사업비 매칭비율로 지원 업체수 확정
- 통합기준에 따라 市가 일괄 모집 후, 해당 군·구별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

기대효과

- 소수 특정품목의 해외시장 진출기회 제공
- 무역상담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무역진흥팀 ☎ 032-440-4284

인천테크노파크 수출지원센터 ☎ 032-260-0631~6

1-32. 해외 거점별 수출지원단 운영

◆ 해외 거점별로 활동 중인 수출 전문가들의 인력 POOL 활용

◆ 특정시장 진출이 필요한 품목의 중소수출업체의 수출 상담에서 사후 관리까지 일련의 과정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관내 업체
 - ※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기업
- 지원내용 : 수출지원단 지원, 자료료 지원, 상담지원, 성약지원 및 사후지원 등
- 지원기준 : 업체당 290만원 범위 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비즈오케이)
- 사업수행 : 인천테크노파크

2018년 실적

- 지원실적 : 19개사

2019년 계획

- 사업비 : 60백만원(시비)
- 지원규모 : 18개사

기대효과

- 특정시장 공략, 제품의 사전 시장조사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등으로 수출 성공률 제고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무역진흥팀 ☎ 032-440-4259

인천테크노파크 수출지원센터 ☎ 032-260-0631~6

1-33.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 구매력이 높은 해외 바이어 초청을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해외 시장 개척 기회 제공
- ◆ 상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내수기업들을 수출기업으로 육성

사업개요

- 참가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한 업체
- 지원내용 : -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 바이어체류에 따른 숙박비, 교통편, 기타 경비
- 사 업 비 : 40백만원
- 사업수행 : 인천테크노파크

2018년 실적

- 지원실적 : 1회, 109개사

2019년 계획

- 개최시기 : 2019년 10월
- 초 청 국 : 아시아 5개국(20개사)
- 참가업체 : 100개사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 배양
- 우수 중소기업제품 해외 홍보

1-34.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 ◆ 중소기업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지원하여 상품의 고품질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관내 업체
※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한 업체
- 지원내용 : CE(유럽), UL(미국) 등 해외인증획득 비용
- 지원기준 : 업체당 400만원 범위 내
- 사업수행 : 한국무역협회

2018년 실적

- 지원실적 : 19개사/400만원

2019년 계획

-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 약 17개사
- 사 업 비 : 64백만원
- 지원사항 : 업체당 400만원 내 지원

기대효과

- 수출유망 품목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무역진흥팀 ☎ 032-440-4282
인천테크노파크 수출지원센터 ☎ 032-260-0631~6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무역진흥팀 ☎ 032-440-4284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 032-260-1104

1-35.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 중소기업 수출거래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담보하여 적극적인 수출활동 전개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업체
※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한 업체
- 지원내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료, 환변동보험 등
- 지원기준 : 업체당 200만원 범위 내
※ 단,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업체당 60만원 범위 내로 제한
- 사업수행 : 한국무역보험공사

2018년 실적

- 지원실적 : 144개사

2019년 계획

-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약 135개사
- 사업비 : 80백만원
- 지원사항 : 단기수출, 수출신용보증, 환율변동 등,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기대효과

- 수출 거래 시 위험해소로 중소기업의 수출활동 강화

1-36. 기업광고 지원

◆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에 필수적인 수출상품 외국어 카탈로그 및 동영상 제작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관내 업체
※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한 업체
- 지원내용 : 외국어 카탈로그, 영상홍보물 제작 비용
- 지원기준
·①+② 2개 항목 400만원 범위
① 제품카탈로그(외국어판) 200만원
② 기업/제품홍보 동영상 제작 300만원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수행 : 인천테크노파크

2018년 실적

- 지원실적 : 34개사

2019년 계획

- 지원개사 : 27개사 내외
- 지원금액
·①+② 2개 항목 400만원 범위
① 제품카탈로그(외국어판) 200만원
② 기업/제품홍보 동영상 제작 300만원

기대효과

-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대 기여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무역진흥팀 ☎ 032-440-4259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 032-458-6962, 422-2717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무역진흥팀 ☎ 032-440-4284
인천테크노파크 수출지원센터 ☎ 032-260-0637

1-37. 해외지사화 사업

◆ KOTRA 해외무역관을 해외지사로 활용하여 해외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및 시장개척사업을 밀착 지원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해외 세일즈 기회 제공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년 수출실적 3,000만불 이하 관내 업체
※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한 업체
- 지원내용
 - 신규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정보제공
 - 바이어 반응조사 등 수출상담 Follow-up
 - 현지 세일즈 출장 시 제반활동 지원
 - 기존 거래선 관리 및 업무연락 등
- 지원기준 : 업체당 200만원 범위 내
- 사업수행 : 인천테크노파크

2018년 실적

- 지원실적 : 19개사

2019년 계획

- 약 17개사
 - 사업비 : 40백만원
- 지원금액 : 업체당 200만원 범위 내

기대효과

- 내수 위주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

1-38.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정부(중기청), 시, 기업의 사업비 분담과 혁신기관과 협업으로 추진

사업개요

- 참가대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직간접수출 500만불 이상
* 혁신형기업은 매출액 50~1,000억원 미만 & 간접수출100만불 이상
- 지원내용

구분	지원방법
해외마케팅(4년간)	- 4년간 최대 2억원 (연간 1억원내) 총사업비 50~70%이내 국비지원
지역자율프로그램(1년)	- 총 3.4억원(업체당 2천만원이내)
기업활동지원비	- 매년 7천만원

- 사업수행 : 인천테크노파크

2018년 실적

- 지원실적 : 15개사(업체당 1,600만원)

2019년 계획

- 지원개사 : 15개사(업체당 2,26만원)

기대효과

-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지역의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월드클래스 300후보군으로 육성 및 지역의 유망기업 육성 활성화 도모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무역진흥팀 ☎ 032-440-4259
인천테크노파크 수출지원센터 ☎ 032-260-0631~6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무역진흥팀 ☎ 032-440-4284
인천테크노파크 SOS팀 ☎ 032-260-0618

1-39. 베트남 인천 우수상품 전시·상담회

◆ 한미 FTA 개정 요구, 사드 영향 등 보호무역 정책 확산에 대응하고 수출다변화를 통한 베트남을 교두보로 동남아시아 진출 확대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관내 업체
※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한 업체
- 지원내용
- 참가사 1인 항공료 50%지원 및 전시쇼케이스 및 바이어매칭, 통역, 단체차량 지원 등
- 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수행 : 인천테크노파크

2018년 실적

- 지원실적 : 50개사 지원

2019년 계획

- 2019년 7월
- 베트남 호치민 전시·상담회 개최 (20개사)
- 2019년 9월
- 베트남 하노이 전시·상담회 개최 (20개사)

기대효과

- 수출다변화를 통한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
- 지방정부간 교류확대 등 인천기업 비즈니스 환경조성
- 주변국가 등 바이어 발굴 등 수출기반 조성 구축

1-40. 수출 초보기업 멘토링 지원사업

◆ 무역전문가를 활용 실무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수출 초보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역량 강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관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수출멘토링 : 기업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수출마케팅 : 수출전문 컨설팅 제공
- 사업비 : 125백만원
- 사업수행 : 인천테크노파크

2018년 실적

- 2019년 신규사업

2019년 계획

- 수출초보기업 25개사 육성
- 2019년 3월 : 사업계획 검토 및 수립
- 2019년 4월 : 멘토/멘티 모집
- 2019년 4월 : 수출 초보기업 멘토링 지원사업 추진

기대효과

-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역량 강화
-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기여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무역진흥팀 ☎ 032-440-4283

인천테크노파크 수출지원센터 ☎ 032-260-0631~6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무역진흥팀 ☎ 032-440-4283

인천테크노파크 수출지원센터 ☎ 032-260-0631~6

1-41.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한 제품완성도 향상
⇒ 기업경쟁력 및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04년부터 매년사업)
- 사업비 : 2,200백만원(국비 1100, 시비1100)
- 지원분야 : 제품, 포장·시각, 멀티, 시제품 개발 등
- 지원규모
 -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 : 총 개발비의 80% 이내(최대 25백만원)
 - 우수디자인 선정 지원 : 100만원 이내 소요실비 지원
- 참여방법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간의 컨소시엄 과제

2018년 실적

-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 : 110개사 지원
- 우수디자인 선정 지원 : 24건 지원

2019년 계획

- 지원목표
 -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 개발지원 110개사 내외, 우수디자인 선정 20건 이상 지원 등
- 추진일정
 -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사업 설명회 : 2월
 - 디자인개발과제 모집 및 지원신청 : 연중(분야별 상이)
 - ※ 사업공고 : 지방신문/인천디자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2 ~ 11월
 -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 6 ~ 11월
 - 우수디자인 상품선정 : 10 ~ 11월
 -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결산 : 12월

기대효과

-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으로, 제품 완성도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취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상품화 촉진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융합기술팀(☎440-4262)
(재)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260-0238)

1-42.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 고용을 활발히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사업개요

- 인증대상
 - 인천소재(본사, 주공장) 2년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단,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배제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최근 2년간 2회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 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 인센티브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등 25개 분야 인센티브 제공
- 인증유효기간 : 2년

2018년 실적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 23개 기업

2019년 계획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 20개 기업 내외
- 업체선정 : 2019. 6월(미달 시 하반기 추가선정 예정)
- 지원사항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내외 우수인증획득,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
 - 신용보증수수료 및 수출보험료 할인 등

기대효과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지원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기반 마련



문의처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032-440-4234)

1-43. 인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장거리 통근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회사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월세)을 지원
- 지원내용 :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 ※ 기숙사의 보증금 및 월임차료 20%는 사업주 부담
 - ※ 관리비 일부(또는 전부) 근로자 부담 가능

2018년 실적

- 인천지역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지원 : 27개사 101명
- 인천지역 산업단지 밖 근로자 기숙사지원 : 50개사 111명
- 남동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지원 : 38개사 121명
- 검단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지원 : 23개사 62명

2019년 계획

- 인천지역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지원 : 100명
- 인천지역 산업단지 밖 근로자 기숙사지원 : 150명
- 남동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지원 : 100명
- 검단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지원 : 65명

기대효과

-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



문의처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과 ☎ 032-440-4232
인천테크노파크 취업지원팀 ☎ 032-725-3033

1-44. (1石5조)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유지 및 생활안정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내용 : 근로자 및 부양가족 후생복지 지원
- 지원규모 : 청년 근로자 800명
- 지원액 : 1년간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제공
- 지원항목 : 건강관리, 자기계발, 레저·취미, 문화생활, 가정친화 등
- 지급방법 : 온누리상품권(1차) 및 복지포인트(2~4차) 제공
- 홈페이지 : young.incheon.k

2018년 실적

- 2018년 지원 인원 : 1,016명
 - 2018. 4월 :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사업 지원 추진

2019년 계획

- 2019년 지원 인원 : 800명

기대효과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으로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유인 및 장기근속 유도



문의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기획팀 ☎ 032-440-4162
인천테크노파크 취업지원팀 ☎ 032-725-3037

1-45.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드림 For 청년통장’

-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장기근속 유지 및 생활안정 도모
-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고용유인책 마련으로 청년고용 촉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근로자 300명
 -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근로자
 - 인천시 거주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자
 -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자
 - 신청일 기준 근무기업 2년이상 재직자
 - 계약연봉 기준 2,400만원 이하인자
 -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 참여자는 제외
- 지원내용 : 3년간 최대 1,000만원 + 이자
 - 본인적립금 360만원(120만원×3년) + 근로장려금 640만원(3년) + 이자

2018년 실적

- 해당없음(2019년도 신규사업)

2019년 계획

- 지원 인원 : 300명
- 대상자 모집 : 5월
- 저축통장 발급 및 지원 : 7월

기대효과

- 중소제조기업 청년근로자 목돈마련지원으로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유인 및 장기근속 유도

1-46. 인천 뿌리산업 평생일자리창출을 위한 경력형성장려금 지원

- ◆ 뿌리산업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을 통한 평생 일자리 사업 기반 조성
- ◆ 고용노동부 ‘지산맞사업’ 연계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으로 효과 극대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대상 : 뿌리산업 신규취업자 및 기업체
- 사업내용 : 경력형성 장려금 지원 및 근로여건 개선사업
- 지원내용 :
 - 경력형성장려금(400명) : 뿌리산업 신규취업자 1년간 월 15만원~30만원 지원 (분기별)
 - 뿌리산업 근로환경개선 사업(15개사) : 목욕시설, 체력단련실 등 직원 복지시설 및 작업장 환경개선

2018년 실적

- 추진실적 : 경력형성 장려금 지원(300명), 근로환경개선사업(11개사)

2019년 계획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대상 : 뿌리산업 신규취업자 및 기업체
- 사업내용 :
 - 경력형성장려금 지원 : 신규 취업자(3개월 이상 근무)인 계약연봉(기본급+정기상여금) 월소득 225만원 이하
 - 근로환경 개선지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인천 거주 시민을 2명 이상 채용한 실적이 있는 인천 뿌리기업 작업장 환경, 직원 복지시설 등 개선 지원 (10백~40백만원)

기대효과

- 뿌리산업지원으로 제조업의 미스매치 해소 기여
- 조기 퇴사 방지로 숙련기술자 양성 토대 마련



문의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과 청년활동지원팀 ☎ 032-440-2887)

인천테크노파크 취업지원팀 ☎ 032-725-3030)



문의처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 032-440-4232)

1-47. 중소기업 신중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지원 사업

- ◆ 고령화에 따른 만60세 이상 중소기업 정년퇴직자의 고용연장 유도를 통한 신중년 일자리 대책 마련
- ◆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안정 및 신중년 생활안정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2022. 12
- 사업규모 : 5억원(2019년도)
- 지원내용
 - 관내 정년을 정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만60세 이상 정년 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통한 신중년 일자리 대책 마련
- 지원분야 : 인천시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2019년 계획

- 사업기간 : 2019. 4월 ~ 12월
- 지원목표 : 200명
- 지원내용
 -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정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 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정년퇴직 신중년 고용연장 지원금」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기대효과

- 인구구조, 기대수명 변화에 맞춘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 신중년 재고용 및 재취업을 통한 고용안정 유도 및 생활안정 도모



문의처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 032-440-4233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지원단 ☎ 032-725-3031

1-48. 산학협력 청년 희망이음 사업

- ◆ 지역 내 중소기업·산업단지 인식개선을 통한 「청년취업」 촉진
- ◆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신사업 발굴, 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및 참여 학생 취업 역량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업시행 주체 :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 지원대상 : 인천소재 중소기업 및 대학생(팀)
- 지원내용 : 인천소재 대학생, 전문가(교수)가 팀을 이루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학생의 취업역량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지역 청년 유입 촉진
- 재원구분 :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 추진체계

구분	역할	업무내용
고용노동부(중부청)	관리기관	사업계획심사, 점검 등
인천광역시	관리기관	총괄계획수립, 지도점검 등
산단공, 인하대	수행기관	사업운영, 성과보고 등

2018년 실적

- 고용노동부 주관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선정
- 참여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의향 조사결과 32.4% 상승
* 참여 전 48.9% → 참여 후 81.3%로 상승

2019년 계획

- 대학별 학기제 운영을 통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
* 단기프로젝트 → 학기제 확산운영·정착
- 지역 청년층 취업을 제고 추진
* 전문 취업 연계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추가하여 채용연계 체계 마련

기대효과

- 인력미스매치 해소
- 산·학·관 협업 문제해결형 일자리 창출 모델 창출
- 산업단지 고용생태계 구축 기여



문의처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 032-440-4232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 070-8895-7458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032-860-9193

1-49. 청년취업지원 남동 산단 무빙콜 사업

- ◆ 남동산단 교통 사각지대 이동으로 해소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
- ◆ 업체 방문, 공무외출, 행정(은행, 공공기관 방문 등) 업무 시 근거리(3km이내) 이동수단 불편·미흡 및 고질화된 주차난에 대한 애로 해결 필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업시행 주체 : 인천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 지원대상 : 남동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 지원내용 : 남동산단 내 활용가능한 근거리 대중교통 수단

활용방법	운영대수	운영시간	운영지역	이용요금
근로자가 전화로 렌터카를 요청하여 사용(콜택시 개념)	5대	10:00~17:00	남동산단 내	무료

- 재원구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
- 추진체계

구분	역할	업무내용
인천광역시	주관기관	총괄계획수립, 지도점검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	사업운영, 성과보고 등
전문 수행기관	용역사	차량관리, 인력관리, 통계관리 등

2018년 실적

- 초기 이용자수 조기확보로 사업안정화 단계 도달
- * 총 이용자수 1,997명(일평균 28.9명), 총이동거리 : 3,892km(콜당 2km)
- ** (이용현황) 공공기관 및 은행(45.8%), 업체방문(25.8%), 전철역(14.1%) 등

2019년 계획

- 일평균 이용자수 상향(20%) 목표설정 및 달성관리
- * 일평균 이용자수 : (1차년도 실적) 28명 → (2차년도 목표) 33명
- 전략적 홍보방안 마련·시행
- * MC활동 연계, 인천지역내 유관기관 연계 등 예산 투입없는 마케팅 추진

기대효과

- 인력미스매치 해소
- 고용안정 효과
- 수요자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기여



문의처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 032-440-4233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 070-8895-7413

1-50. 중소기업 인재채용 지원

-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인재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에 대한 일자리지원
- ◆ 시 일자리센터 운영 및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한 맞춤형 인재 알선, 일자리희망버스를 활용한 동행면접 지원 등 기업이 여건을 고려한 채용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 대상 : 중소기업, 시민(구직자 등)
- 주요내용
 - 시 일자리센터 운영 : 운영인력 16명, 취업목표 5,000명, 사업비 681백만원
 - 일자리박람회 개최 : 행사개최 6회, 사업비 100백만원
 - * 채용설명회 2회, 일자리박람회 4회
 - 일자리희망버스 운영 : 운영횟수 180회, 취업인원 300명, 사업비 100백만원
 - * 45인승 버스 1대, 상담사 2명

2018년 실적

- (일자리센터) 취업자 4,226명/동행면접 80회, 현장채용관 4회 등
- (일자리박람회) 채용설명회 4회, 일자리박람회 4회(전계층, 병역지정업체, 특성화 고교 등)
- (일자리희망버스) 운영횟수 210회, 상담인원 2,888명, 취업인원 219명

2019년 계획

- (일자리센터) 취업자 5,000명/동행면접 100회, 현장채용관 5회 등
- (일자리박람회) 채용설명회 2회, 일자리박람회 4회(전계층, 병역지정업체, 특성화 고교 등)
- (일자리희망버스) 운영횟수 180회, 상담인원 3,000명, 취업인원 300명

기대효과

-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본연의 경영 활동 극대화 지원



문의처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 032-440-4241~4)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지원단 ☎ 032-725-3012~19)

1-51.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 ◆ 근로환경개선을 통한 기업 인식개선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환경 조성
- ◆ 우수기업 선정 인센티브 제공으로 청년채용 독려 및 일자리창출 확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인천테크노파크
- 사업비 : 1,000백만원 ※ 기업지원비 910, 운영비 등 90
- 사업대상 : 30개 중소기업
 - 청년 신규채용 2명 이상 포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인천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 중견기업의 경우 10인 초과 채용부터 적용
- 청년채용 인원기준에 따른 차등지원

채용인원	2~3인	5인 이하	10인 이하	10인 초과
지원금액	10백만원 이내	20백만원 이내	30백만원 이내	40백만원 이내

※ 지원금 대비 기업 자부담 매칭 가능

- 사업내용 : 기업 직원복지 근로환경 개선
 - 휴게실,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안마기, 운동기구, 에어컨 등 자본재 구입 비용 지원

2018년 실적

- 2018년도 추진실적

(단위:개소)

목표	신청기업	탈락기업	지원실적	목표달성률
30	63	17	46	153.3%

* 고용실적 : 46개소(청년 414명 고용)

2019년 계획

- '19. 2~3월 : 세부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사업비교부 등
- '19. 4~12월 : 대상기업 신청·접수 및 사업추진
- '20. 1월 : 사업추진 성과분석 및 피드백

기대효과

- 중소기업 선정 인센티브 제공으로 청년채용 확대
- 근로환경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인식개선으로 청년고용 증진



인천광역시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기획팀 ☎ 032-440-4163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팀 ☎ 032-725-3040

02 남동구

인천광역시 지원사업
BLOCK TALK!

2-1.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 ◆ 마케팅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 증진 도모
- ◆ 관내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남동구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매출액 1,000억 이하인 중소(제조)업체
 - 지원내용 : 행사실비(참가비, 통역비, 시장조사비 등) 및 항공비 일부 지원
 - 참가품목 : 종합품목
 -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가정용품, 건축자재, 정보통신 등
- 2018년 실적**
- 파견기간 : 2018. 8. 6 ~ 8. 11 (4박 6일)
 - 파견지역 : 미얀마(양곤), 베트남(호치민)
 - 파견규모 : 10개사
- 2019년 계획**
- 모집기간 : 상반기 모집완료/ 하반기 2019년 6월 중
 - 파견기간 : 2019년 4월, 9월 예정
 - 파견지역 : 상반기(체코, 폴란드), 하반기(러시아, 몽골)
 - 파견규모 : 상반기 10개사/ 하반기 1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참가비, 통역비, 홍보비, 항공료(50%) 지원
 - 사업비 : 160,000천원
- 기대효과**
- 독자적 해외마케팅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증진 도모
 - 신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2.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 구매력이 높은 해외 우수 바이어 초청을 통하여 남동구 기업과 1:1매칭 수출 상담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시 기 : 2019. 9월 중 (예정)
 - 장 소 : 남동구 관내 호텔
 - 지원대상 :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무역, 제조)
 - 참가규모 : 해외 바이어 40개사, 관내 기업 70개사
 - 지원내용
 - 바이어 모집, 상담알선 및 상담장 운영비용, 통역비, 세미나
 - 국내체재비, 항공료 일부 등
 - 사업비 : 50,000천원
- 2018년 실적**
- 일 시 : 2018.9.13.(수)
 - 장 소 :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
 - 대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 사업비(집행액) : 50,000천원
 - 초청바이어 : 중화권/동남아 전문 유통 빅바이어 42개사
 - 참가업체 : 남동구 소재 업체 53개사
 - 지원결과 : 상담횟수 171회 / 상담금액 21,207천불
- 2019년 계획**
- 해외 바이어 모집 : 2019. 5월 ~ 6월
 - 참가업체 모집 : 2019. 7월 ~ 8월
 - 수출 상담회 개최 : 2019. 9월 중
 - 정산 및 성과 보고 : 2019. 10월 중
- 기대효과**
- 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활력소 및 미래 성장 동력 기대
 - 저비용 고효율의 해외시장 개척 기회 제공 및 내수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 도모

2-3.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 해외시장 개척과 자사브랜드 홍보 확대를 통한 수출역량 극대화
- ◆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 배양 및 제품의 자생력 강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남동구 중소(제조)업체
- 지원내용 : 행사실비(부스임차료, 운송료, 통역비 등)
- 참가업종 : 기계설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가정용품, 건축설비 및 건설기계, 식품류, IT, 금형, 화장품, 종합상품 등

2018년 실적

- 2018년도 해외박람회 참가현황

참가시기	참가박람회	지원규모	지원내용	사업비
2018.08.29.~09.02.	일본유기농전시회	5개사	박람회 참가비용지원	36,000천원
2018.11.13.~11.17.	홍콩국제미용전	6개사		44,000천원
합 계	2개국	11개사		80,000천원

2019년 계획

- 2019년도 해외박람회 참가계획

참가시기	참가박람회	지원규모	지원내용	사업비
2019.05.29.~06.03.	베트남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10개사	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36,000천원
2019. 11월	홍콩국제미용전	6개사		44,000천원
합 계	2개국	16개사		80,000천원

기대효과

- 국제시장 동향 파악 및 수출역량 강화
-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마케팅 능력 배양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 기반 조성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2-453-5163

2-4.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 소수 특정품목의 해외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틈새시장 개척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남동구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지원내용 : 참가비 일부 지원 (부스 임차료 등)
- 참가시기 : 연중
- 참가지역 :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개별참가 희망지역

2018년 실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비 : 189,625천원
(구비 100,000천원 / 시비 89,625천원)
- 사업성과 : 43개사 지원

상담		계약추진(검토)		계약	
건	금액(천불)	건	금액(천불)	건	금액(천불)
1,270	38,619	209	11,578	23	827

2019년 계획

- 지원대상 : 남동구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지원규모 : 47개사
- 모집기간 : 2019. 1. 21. ~ 2. 22.
- 지원금액 : 업체별 5,000천원 범위 내
- 사업비 : 244,400천원
(구비 120,000천원 / 시비 124,400천원)

기대효과

-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 판로 개척으로 수출 증진 도모



문의처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2-453-5164

2-5.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품목별로 특성 있고 전문화된 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 제조업체를 지원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 및 국내시장 개척

사업개요

- 시 기 : 연 중
- 지원대상 : 남동구 관내 중소(제조)기업
- 대상전시회 : COEX, KINTEX 등 전문 전시공간에서 연중 개최하는 국내 전시·박람회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부스임차비(100%), 시설 구축·홍보비(60%)
※ 업체당 2,000천원 한도
- 사 업 비 : 30,0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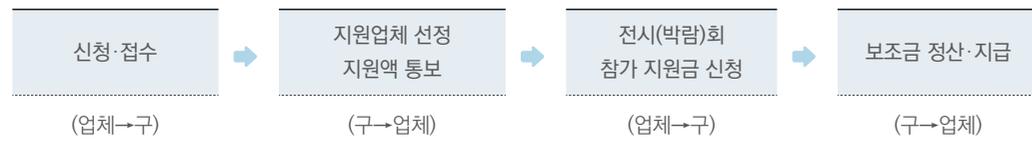
2018년 실적

- 지원내용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14개 업체
총 27,400천원 지원
- 사업결과

상담 건	계약 건
상담건수 : 657 건	계약건수 : 34 건
상담금액 : 15,052 백만원	계약금액 : 1,793 백만원

2019년 계획

-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 2019. 2월 ~ 11월



- 신청업체에 대한 점검 실시 : 2019. 6월 ~ 11월
- 사업 종료 및 결과 보고 : 2019. 12월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를 창출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술지원팀 ☎ 032-453-2698

2-6.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

◆ 독자적으로 해외지사 설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및 비용 절감을 통해 해외수출의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남동구 관내 공장 등록 중소기업체
- 지원내용 : 해외지사 역할 수행비 일부 지원
※ KOTRA 해외무역관이 업체의 해외지사 역할 수행
- 참가지역 : 개별기업 해외진출 희망지역

2018년 실적

- 사업기간 : 2018년 연중
- 지원규모 : 15개사
- 지원내용 : 해외지사화 사업 협약체결[KOTRA↔기업] 비용 중 일부 지원

2019년 계획

- 사업기간 : 2019. 1월~12월
- 모집기간 : 2019. 2. 1. ~ 2. 28.
- 지원규모 : 15개사
- 지원내용 : 해외지사화 사업 협약체결[KOTRA↔기업] 비용중 일부 지원
- 사 업 비 : 30,000원

기대효과

-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 확대
- 신규바이어 발굴 및 시장성 조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비용 절감을 통해 해외수출의 경쟁력 강화
- 내수 위주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2-453-5164

2-7. 무역실무교육 개최

◆ 무역 실무 관련 정보제공을 통한 관내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남동구 관내 중소 수출기업
- 사업내용 : 무역실무 전문교육[무역절차, 무역영어 등] 실시
- 운영방법 : 연 2회, 전문기관(한국무역협회) 위탁
- 사업비 : 11,000천원

2018년 실적

- 추진실적
 - 일 시 : 상반기(2018.4.25.(수)~4.26(목)), 하반기(2018.11.14(수)~11.15(목))
 - 장 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 참석 : 총 45명(상반기 22명, 하반기 23명)

2019년 계획

- 상반기 무역실무(무역영어) 교육
 - 교육기간 : 2019. 4. 25(목) ~ 4. 26(금)
 - 신청접수 : 2019. 3. 18(월) ~ 4. 10(수)
 - 장 소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소강당
 - 대 상 : 관내 수출기업 및 무역업 종사 구민 30명 내외
- 하반기 무역실무 교육
 - 2019. 9 ~ 10월(예정)

기대효과

- 수출기업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2-8.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

◆ 관·학·산 관계자로 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정보 교류, 공동 연구 개발로 기술경쟁력 강화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
- 구성분야 : 뷰티, 자동차(기계), 정보융합, 이업종
- 구성규모 : 각 분야 클러스터별 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정보교류, 기술개발 자문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2018년 실적

- 2018. 1. 18. : 미니클러스터 참여업체 모집 공고
- 2018. 5.20.~26. : 미니클러스터 무역사절단 파견(UAE, 터키)
- 2018. 7. 19. : 미니클러스터 상반기 세미나 개최
- 2018. 11. 26. : 미니클러스터 하반기 세미나 개최

2019년 계획

- 미니클러스터 모집 : 2019. 1월 ~ 12월
- 미니클러스터 분야별 모임개최 : 2019. 1월 ~ 12월
- 클러스터 무역사절단 파견 : 2019. 6월
- 세미나 개최 : 2019. 6월, 11월
- ※ 미니클러스터 참여기업 : 198개사 (2019. 3월 기준)

기대효과

- 동종기업 간 미니클러스터 구성으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와 기술개발 촉진
- 미니클러스터 무역사절단 파견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2-9. 미니클러스터 수출지원

◆ 미니 클러스터 동종업체별 수출 유망지역을 선정하여 무역사절단을 파견함으로써, 해외시장 판로 확대 및 동종업종의 시너지 효과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남동구 미니클러스터 참여 중소기업
 - 뷰티 : 화장품, 미용 관련 용품
 - 정보융합 : 전기전자, IT
 - 자동차(기계) : 자동차 부품, 기계(부품)
 - 이업종 : 기타 분야
- 파견지역(예정) : 미얀마(양곤), 태국(방콕)
- 지원내용 : 참가비, 통역비, 시장조사비, 항공비 일부

2018년 실적

- 파견기간 : 2018. 5. 20. ~ 5. 26. / 5박 7일
- 파견지역 : 아랍에미리트(두바이), 터키(이스탄불)
- 지원규모 : 8개사
- 내 용 : 수출 상담회, 현지 시장조사 등
- 사업결과 : 상담 74건(5,158천불), 계약추진 및 현장계약 29건(3,125천불)

2019년 계획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 사 업 비 : 60,000천원
- 모집기간 : 2019. 1월 ~ 3월
 - ※ 미니클러스터 참여업체 위주로 사업 추진
- 무역사절단 파견 : 2019. 6. 24. ~ 29.
- 파견지역 : 태국(방콕), 미얀마(양곤)
- 성과보고 : 2019. 11월

기대효과

- 전문무역사절단 파견으로 동종업종 간 시너지 효과 도모
- 수출시장과 마케팅 정보교류로 시장 다변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술지원팀(☎ 032-453-2697)
(재)인천테크노파크 수출지원센터(☎ 032-260-0633)

2-10.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언어장벽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에 통·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해외시장 수출 확대 기회 및 역량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남동구 관내 수출 중소(제조)기업
- 지원내용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통·번역
 - 통역 : 무역관련 서류, 계약서, 매뉴얼, 회사소개 등
 - 번역 : 해외바이어 주선 상담, 바이어초청 또는 행사
- 지원한도 : 최대 800천원

2018년 실적

- 통·번역서비스 지원내역

신청기업수	총 신청건수	지원형태	
		통역	번역
68개사	211건	19건	192건

2019년 계획

- 접수기간 : 2019.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800천원
- 사 업 비 : 30,000천원

기대효과

- 외국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지역 및 매출 확대의 기회 제공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2-453-5163)

2-11. 남동구 공동브랜드 지원

◆ 남동구와 관내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상징하는 공동브랜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남동구 정체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남동구 관내 우수제품 생산 중소기업

네 임 명		디 자 인 (안)	
국내용	국외용	국내용	국외용
남동GO	Nadogo		

- 지원내용 : 상표 출원 등록 및 지원

- 2018년 실적**
- 공동브랜드 상표 등록 : 17개 상품류
 -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업체 선정 : 9개 기업 선정
 - 공동브랜드 마케팅 지원 : 상표 디자인 및 인쇄비용 지원 [총 18,000천원]

- 2019년 계획**
-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업체 모집 : 연중
 -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업체 선정 : 10개 기업 선정
 - 공동브랜드 마케팅 지원 : 상표 디자인 및 인쇄비용 지원
 - 사업비 : 20,000천원

- 기대효과**
- 우수제품 생산업체의 매출확대 및 경쟁력 강화
 - 브랜드 활용 업체의 시장정보 공유로 판로확대 도모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2-453-5162

2-12. 기업지원 홈페이지 운영

◆ 기업지원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남동구 지원사업의 온라인 신청접수, 기업지원 관련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
 - 사이트주소 : <http://biz.namdong.go.kr>
 - 남동구 기업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접수
 - 유관기관의 기업지원시책 정보를 수집·분석·종합화
 - 기업지원 메일링 서비스
 - 대량메일 시스템을 통하여 각 유관기관의 넘쳐나는 기업지원 사업 정보를 수집하여 메일로 제공
 - 신청방법 :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2018년 실적**
-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 추진실적

구 분	회원가입 업체수(개사)	누적 방문자수(명)	정보제공(건)	비 고
2018년	193	66,418	9,031	
누적합계	932	290,349	16,634	

- 기업지원 메일링서비스
 - 메일 수신 : 남동구 관내 약 3,500여개사
 - 정보 수집 및 안내 : 연간 500여건
 - 기업 정보 안내 및 민원 편의행정 구현

- 2019년 계획**
- 서비스 이용대상자 확대
 -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기업지원 사업 관련 종합화·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기업지원시책의 효율화 및 기업 편의 도모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2-453-5164

2-13.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사업화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와 매출확대로 지역 고용 및 경제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남동구 관내 아이디어 보유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생활용품
- 지원내용 : 디자인기획, 제품(금형)설계, 샘플제작, 산업재산권 권리화 등
- 지원한도 : 완성형 10,000천원, 개발형 5,000천원 / 업체
- 사 업 비 : 100,000천원

2018년 실적

- 2018. 2. 7. :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18. 2. 8. : 협업기관 선정 (재) 인천테크노파크
- 2018. 2. 20. :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 2018. 4. 16. : 아이디어사업 선정 및 추진(9건)
- 2018. 9. 6. : 대행사업 집행상황 지도·점검 실시
- 2018. 12.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2019년 계획

- 계획수립 : 2019. 1월
- 협약체결 : 2019. 2월
 - 남동구청 ⇄ (재)인천테크노파크
- 업체모집 : 2019. 3. 29.까지
- 중간점검 : 2019. 9월(예정)
- 성과분석 : 2019. 12월(예정)

기대효과

- 우수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신규 사업화 지원
- 신제품 개발을 통한 매출확대 및 경쟁력 강화 도모

2-14.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 기술과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인지도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남동구 관내 중소(제조)기업
- 지원분야
 - 국내인증 획득지원 : KC,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17개 분야
 - 해외인증 획득지원 : CE, UL, FCC, GOST 등 220개 분야
- 지원방법 : 인증 획득업체 보조금 교부
- 사 업 비 : 100,000천원

2018년 실적

- 지원내용 : 인증 획득업체 14개사 지원
 - 국내인증 : 5개사, 해외인증 : 9개사
- 사 업 비 : 50,000천원

2019년 계획

-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 ※ 80% 한도 내 분야별 차등 지원 2,000천원 ~ 5,000천원
- 추진계획
 - 홍보 및 접수·선정 : 2019. 1월 ~ 2월
 - 협약서 체결 : 2019. 3월
 - 보조금 교부 : 협약서 체결 후 인증획득 시
 - 성과 보고 및 현판 수여 : 2019. 12월

기대효과

-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획득을 통한 수출 촉진 및 기술 장벽 해소
- 안전 및 환경 분야 인증획득을 유도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환경보전에 기여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술지원팀(☎ 032-453-2697)
(재)인천테크노파크 기업SOS센터(☎ 032-260-0614)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술지원팀(☎ 032-453-2698)
(재)인천테크노파크 기업SOS센터(☎ 032-260-0616)

2-15.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지원

◆ 산·학·연 관계 전문가로 기술지도 위원단을 구성·지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체
- 지원분야 : 기술개발, 품질경영, 디자인, 자동화 등
- 지원내용 :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지도 및 자문
- 협력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 사업비 : 50,000천원

2018년 실적

- 지원규모 : 20개사(1차 13개사, 2차 7개사)
- 지원내역

구분	계	분야별					
		기술개발	품질관리	경영	자동화	디자인	마케팅
지원건수	20	5	3	2	1	2	7

2019년 계획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 공고 및 접수(2회) : 2019. 2~3월, 4~5월
- 지원업체 선정(2회) : 2019. 3월, 5월
- 사업추진 : 2019. 2월 ~ 12월
- 성과보고 : 2019. 12월

기대효과

- 기업의 기술력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시장 경쟁력강화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술지원팀 ☎ 032-453-2697
(재)인천테크노파크 기업SOS센터 ☎ 032-260-2890

2-16.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비용을 지원하여 산업재산권 보호와 신제품 개발 촉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체
- 지원분야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선행기술조사 등
- 지원내용 : 특허 등의 출원 및 선행기술조사, 소요비용 지원
- 협력기관 : 인천상공회의소(인천지식재산센터)
- 사업비 : 100,000천원

2018년 실적

- 지원실적 : 총 76건

계	국내특허	국내디자인	국내상표	해외특허	해외디자인	해외상표	기타
76	15	14	14	6	3	6	18

2019년 계획

- 계획수립 : 2019. 2월
- 협약체결 : 2019. 3월
- 남동구청 ↔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 중간점검 : 2019. 9월
- 성과분석 : 2019. 12월

기대효과

- 산업재산권 보호육성으로 기술경쟁력 향상
- 특허등록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지원으로 특허권 확보 및 권리보호
- 선행기술 DB를 적극 활용, 관련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제시, 중복연구 및 투자 방지, 특허분쟁 등을 예방
- 선행기술 조사 분석을 통해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기술이전 활성화 및 휴먼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술지원팀 ☎ 032-453-2697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 특허파트 ☎ 032-810-2875

2-17.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지원

◆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컨설팅 및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모듈 지원으로 남동구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유도

사업개요

- 지원분야 : 국제 지식재산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모듈 지원,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 8개사 내외
- 협력기관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
- 사업예산 : 20,000천원

2018년 실적

- 지원실적 : 총 8건

계	K-브랜드 보호	수출분쟁예방	현안전략	비고
8	1	6	1	

2019년 계획

- 협약체결 : 2019. 3월
- 남동구청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
- 업체모집 : 2019. 3. 29.까지
- 중간점검 : 2019. 9월
- 성과분석 : 2019. 12월

기대효과

- 정부 경제정책 기조(수출회복 총력)에 따른 수출 기업 육성 지원
- 지식재산 종합적 컨설팅 지원을 통해 관내 수출기업 분쟁 리스크 완화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술지원팀 ☎ 032-453-2697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 특허파트 ☎ 032-810-2877

2-18.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

◆ 기술개발 시 초기 개발비의 부담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장비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제품 개발을 촉진

사업개요

- 지원기간 : 연중 수시 (당해예산 소진시 지원 마감)
- 사업비 : 15,000천원
- 지원대상 : 남동구 중소기업체로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소, 대학 등에서 장비 이용업체
- 지원금액 : 업체별 2,000천원 범위내 (장비사용료 70%)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남동구 미니클러스터 참여기업 등 우대기업의 경우 3,000천원까지 지원

2018년 실적

- 지원내용 :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체 8개 업체의 시험 장비사용료 지원

2019년 계획

- 지원규모 : 7개사 내외
- 모집공고 : 2019. 1월 ~ 2월
- 신청기간 : 공고 후 ~ 12월 (당해예산 소진시 지원 마감)
- 성과보고 : 2019. 12월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으로 지역의 혁신 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산업을 활성화
- 고가장비 사용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완화 및 기술개발 의욕 고취
- 대학이 보유한 첨단장비를 중소기업에 개방함으로써 고가 R&D장비의 휴면화를 방지하고 장비사용 활성화
- 관청·대학·중소기업의 삼각협력에 따른 지원정책의 효율성 증대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술지원팀 ☎ 032-453-2698

2-19. 스마트공장 확산지원 사업

◆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중소 제조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 유형에 선정된 기업
 - 지원규모 : 스마트공장 구축비의 10%(최대 1천만원 이내/업체)
 - 협력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예산 : 200,000천원
- 2018년 실적**
- 2019년 신규사업
- 2019년 계획**
- 기본계획 수립 : 2019. 1월
 - 협약체결 : 2019. 2월
- 남동구청 ⇄ (재)인천테크노파크
 - 업체모집 : 2019. 3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중간점검 : 2019. 9월
 - 성과분석 : 2019. 12월
- 기대효과**
-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장비 등 구입 지원, 스마트공장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마트공장 시스템 도입 지원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술지원팀(☎ 032-453-2697)
(재)인천테크노파크 기업SOS센터(☎ 032-260-0613)

2-20.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관의 입찰 및 낙찰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영역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유도

- 사업개요**
- 대 상 :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사업자등록업체)
 - 내 용
- 물품, 시설, 공사 등의 입찰 및 낙찰 정보 제공
- 입찰전문가에 의한 실시간 상담
- 전자입찰 실무교육 무료 실시
 - 사업비 : 24,500천원
※ 사업비 24,500천원 중 500천원은 전자입찰교육 운영비임
 - 사이트 : <http://bid.namdong.go.kr>
- 2018년 실적**
- 회원가입 : 694개사
 - 낙찰실적 : 438개사/ 591건/ 1,028억원
 - 전자입찰 실무교육 : 36기업/ 45명
 - 모바일 앱서비스 개설(<http://mbid.namdong.go.kr>)
- 2019년 계획**
-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 연 중
- 물품, 시설, 공사 등의 입찰 및 낙찰 정보 제공
- 입찰전문가에 의한 실시간 상담
-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정보제공 실시
 - 전자입찰 실무교육 무료 실시 : 연 2회
- 이론 및 투찰방법 등 실무전수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안정
 - 관내기업에 대한 영업지원으로 관·산 협력 강화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산업지원팀(☎ 032-453-2693)

2-2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과 시설투자 촉진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통한 자립성장 기반 구축

사업개요

- 대상 :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
- 규모 : 50억원
- 지원내용 : 융자협약은행의 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 지원한도 : 업체당 300백만원 이내
- 이차지원 : 연 1.7% ~ 2.0% (상환 : 3년, 5회 균등분할)
 - 우대지원(2.0%) : 남동구 우수기업인상 수상업체(최근2년간),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남동구미니클러스터 참여기업(2회이상), 4차산업, 신성장업종

2018년 실적

- 신청 : 12개사 / 3,350백만원
- 지원결정 : 12개사 / 3,350백만원
- 대출실행 : 5개사 / 1,238백만원
- 이차보전 : 126백만원

2019년 계획

-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 2019. 1.
 - 융자지원계획 심의의결 및 계획수립
- 융자지원 : 2019. 1월말 ~ 자금 소진시까지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대외경쟁력 확보
- 기술집약적 기업의 육성으로 자립성장 기반 구축
- 지역인력의 고용과 지역경제 발전 도모

2-22.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

사업개요

- 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
- 규모 : 90억원
- 지원내용 : 융자협약은행의 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 지원한도 : 업체당 50백만원 ~ 300백만원 이내
- 이차지원 : 연 1.7% ~ 2.0% (상환 : 3년, 5회 균등분할)
 - 우대지원(2.0%) : 남동구 우수기업인상 수상업체 (최근2년간),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남동구미니클러스터 참여기업(2회이상), 4차산업, 신성장업종

2018년 실적

- 신청 : 42개사 / 9,432백만원
- 지원결정 : 42개사 / 9,432백만원
- 대출실행 : 35개사 / 7,636백만원
- 이차보전 : 129백만원

2019년 계획

- 기본계획 수립 : 2019. 1.
- 융자지원 : 2019. 1월말 ~ 자금 소진 시까지

기대효과

- 자금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에 기여

2-23.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채무에 대한 특례보증을 해줌으로써 원활한 자금 융통으로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사업개요

- 대 상 : 남동구 관내 소기업(제조업)·소상공인
- 보증한도 : 소기업 1억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보 증 료 : 5천만원 이하 연 1%/ 5천만원 초과 연 1.2%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2018년 실적

- 보증기관 출연금 : 150백만원
- 신 청 : 58개사 / 1,268백만원
- 지 원 : 53개사 / 1,070백만원

2019년 계획

- 지원기간 : 2019. 1월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남동구 관내 소기업(제조업)·소상공인
- 협약체결 : 남동구청장 ↔ 인천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에 대한 보증운용배수 : 12배
 - 출 연 금 : 100백만원

기대효과

- 소기업·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화 및 고용 촉진 등 경제정책 효율성도모
-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24. 남동구 중소기업 규제개선 음부즈만 운영

◆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과 성장을 제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의를 통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행정지원강화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년 3월 ~
- 사업대상 :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체
- 주요내용
 -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규제 발굴 추진
 - 기업음부즈만 운영을 통한 규제 및 애로사항 해결 추진
 - 기업 행정지원 강화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

2018년 실적

- 2019년 신규사업

2019년 계획

- 2019. 1월 : 남동구 기업음부즈만 운영계획 수립
- 2019. 3월~11월 : 현장 중심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모색
- 2019. 4월 : 남동구 기업음부즈만 구성 및 운영
- 운영방법 :
 - 남동구 기업음부즈만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2019. 5월)
 - 남동구 기업음부즈만 현장회의 실시(2019. 10월)
 - 맞춤형 기업상담 서비스 제공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기업지원 행정서비스체계 구축

기대효과

- 규제 개선을 통한 관내 기업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기업 고충현장 방문 및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 신뢰행정 구현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산업지원팀 ☎ 032-453-2691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2-453-5160

2-25. 소상공인 역량강화 맞춤형 컨설팅

◆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9월 ~12월
 - 2018. 9월 : 사업계획 수립
 - 2018. 10월 : 대상업체 및 컨설턴트 모집
 - 2018. 12월 : 사업완료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사업내용
 - 소상공인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컨설팅 실시
 - 컨설턴트의 개선권고사항(점포운영 등)을 각 업체에 전달하여 매출증대 방안 모색

2018년 실적

- 관내 소상공인업체 : 13개소 선정하여 사업 시행

2019년 계획

- 2019. 2월 : 계획수립
- 2019. 3~4월 :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2019. 4~6월 : 사업 시행
- 2019. 6월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기대효과

-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 지원

2-26. 악취방지시설보조금 지원

◆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 중인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6월
- 지원대상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사업비 : 262,500천원
- 지원범위 :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50,000천원 이하
- 지원비율 : 70% 이내(자부담 30% 이상)
- 보조금 우선 지원 대상
 - 악취관리 취약 사업장 기술진단을 받은 사업장
 - 반복적인 악취민원 발생으로 방지시설 개선이 시급한 경우 등

2018년 실적

- 지원업체 : [순수금속] 등 5개 사업장
- 지원금액 : 175,000천원
- 지원내용
 -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 중인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노후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2019년 계획

- 지원규모 : 7~8개사 내외
 - 악취보조금 지급 심의 결과에 따른 지원
- 추진계획
 - 보조금 신청 및 접수 : 2019. 1월
 - 보조금 지원업체 선정 및 교부결정 : 2019. 2월
 - 보조금 대상업체 착공신고서 접수 : 2019. 3월
 - 보조금 대상업체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급 : 2019. 5~6월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 비용 부담 경감
- 남동공단 등과 인접한 주거지역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문제 해소



문의처

남동구 생활경제과 유통팀 ☎ 032-453-5197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보전과 산업환경팀 ☎ 032-453-2612

2-27. 남동구 일자리센터 운영

- ◆ 구인·구직 정보 통합관리와 능동적 일자리 발굴로 지역주민 취업을 제고
- ◆ 구직자가 언제 어디서나 일자리 정보와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는 허브기능 수행

사업개요

- 친절하고 편리한 구인·구직상담 서비스 제공
 -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 다양한 채용행사 및 일자리지원 서비스 제공
 - 구인구직 만남 채용행사, 동행면접, 이동상담실 운영
- 구인개척 활동 강화
 - 구인처 합동 발굴, 틈새일자리 발굴
- 남동구 일자리 인력은행 홈페이지 운영

2018년 실적

-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
 - 추진기간 : 2018. 1. 1. ~ 2018. 12. 31.

구분	구직 등록	구인등록		알선 건수	취업자수 (상담사 알선취업건수)
		업체수	구인인원		
워크넷	11,997	4,824	7,009	45,560	9,042(3,316)

2019년 계획

-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배치 및 운영

구분	전담 인력	주요 기능 및 역할	공동업무
일자리센터 (평생학습관)	4명	- 채감형서비스 제공 - 동간 협력 네트워크 운영	-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 일자리 관련 행사 지원
동행정복지센터 취업상담창구	20명 (동별 1명씩)	- 동 중심 구인처 및 구직자 집중 발굴(틈새일자리 발굴)	- 구인·구직자 취업 통계관리 - 취업 후 사후관리(미스매치해소)

- 동행면접 주 1회 실시 및 이동상담실 수시 운영
- 구인처 합동 발굴 운영

기대효과

- 구인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구직기간 단축 및 직업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안정 지원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032-453-598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센터 ☎ 032-453-2497~8, 5987~8)

2-28. 채용박람회 개최

- ◆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구직활동(면접) 및 취업기회 제공
- ◆ 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채용률 제고

사업개요

- 운영주체 : 일자리센터
- 대 상 : 구인업체 및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 참가방법
 - 기업체 :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접수 등
 - 구직자 : 당일 행사장 참여(현장면접)
- 내 용
 - 구인업체와 구직자와의 1:1 현장면접
 - 간접참여업체의 채용설명 및 이력서 접수
 - 공동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취업관련 부대행사

행사명	주기	횟수 (연간)	규모		비고(면접)
			구인 기업수	구직자수	
① 상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주	36회	2개 이하	10명내외	1:01(개별)
② 구인구직 만남의 날	월	7회	10개 이하	70~100명	1:多數(그룹별)
③ 채용박람회	반기	2회	40개 이상	300~500명	1:多數(대규모)

2018년 실적

- 구인구직만남의날 개최 : 8회 / 591명 참여 / 65명 채용
- 채용박람회 개최 : 3회 / 912명 참여 / 100명 채용

2019년 계획

- 채용박람회
 - 50개 이상의 구인업체 및 500여명의 구직자
 - 연간 2회 행사 운영(3월, 10월)
- 구인구직만남의 날
 - 10개 이상의 구인업체 및 80여명의 구직자
 - 연간 7회 행사 운영(2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 사업비 : 20,000천원

기대효과

- 구인·구직간 현장 면접을 통한 채용 및 취업기회 제공으로 취업률 제고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032-453-598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센터 ☎ 032-453-2497~8, 5987~8)

2-29. 남동국가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운행

- ◆ 남동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출·퇴근 지원 공동통근버스 운영
- ◆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남동구 구인·구직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지역 : 남동국가산업단지 전 지역
- 사업대상 :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근로자
- 운영내용 : 남동구 도심, 수인선 및 인천1호선 연동 산업단지 내 출퇴근 무료공동통근버스 운행
- 운영방법 : 4개 노선, 45인승 버스 10대, 무료

2018년 실적

- 일일 평균 탑승인원 : 1,689명
- 총 탑승인원 : 341,184명

2019년 계획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지역 : 남동국가산업단지 전 지역
- 사업대상 :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 운영방법 : 4개 노선, 45인승 버스 10대, 무료
 - 5개 전철역 및 만수동 도심 연계(노선 일부 변경 가능)
- 사업비 : 660,000천원

기대효과

- 남동국가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고용지원팀 ☎ 032-453-6062
 (사)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 032-821-2232

2-30.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 사업

- ◆ 안정적·생산적 일자리 창출에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신규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 ◆ 구인·구직난을 겪는 지역 기업체와 구직자간의 양방향 연계 추진으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및 민간부문 고용확대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남동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구민을 채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제조업체
- 지원조건 및 기간
 - 채용 3개월 경과 후 최대 6개월간 지원
 - 근로계약일 기준 남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는 자를 채용한 경우
 -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 지원수준 : 근로자 기본급이 남동구 생활임금 기준 이상은 60만원, 미만은 30만원 상당액을 대상 기업체에 임금지원(청년·고령자는 20만원 추가지원)
 - ※ 2019년도 남동구 생활임금 : 시급 9,490원(월 209시간 기준1,983,410원)

2018년 실적

-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집행실적
 - 146개 업체 200명 지원

2019년 계획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인원 : 200명 내외
- 사업홍보 및 참여기업 모집 : 2019. 1월 ~ 사업종료시
- 고용지원약정 체결 및 지원사업 개시 : 2019. 1월
- 지원금 지급 및 대상기업 관리 : 매월 필요시
- 지원금 정산 및 사업종료 : 2019. 12월중
- 사업비 : 500,000천원

기대효과

-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지역 구직자 양방향 매칭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고용지원팀 ☎ 032-453-6063

2-31. 남동국가산업단지 기숙사 지원사업

◆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남동구 구인·구직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최대 1년
- 사업내용 :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임차료 지원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80% 또는 1인당 30만원 지원

2018년 실적

- 추진실적 : 38개 기업 121명 지원

2019년 계획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대상 :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근로자 100명 내외
- 사업내용 :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임차료 지원
- 지원기준 및 방법
 - 월 임차료의 80%지원(보증금 및 임차료 20%는 수혜 기업 부담)
 -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신규 채용자 20% 이상)

기대효과

- 남동국가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영 활성화

03

강화군

인천광역시 지원사업
BLOCK TALK!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고용지원팀 ☎ 032-453-6062
인천테크노파크 취업지원팀 ☎ 032-725-3031

3-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담보 여력이 부족하여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추천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 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소상공인 50백만원, 중소기업 100백만원 이내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2018년 실적

- 특례보증 추천 46업체(2018.12.05기준)

2019년 계획

- 보증여력 : 1,331백만원(2018.12.05기준)
- 신청시기 : 연중(보증규모 소진시까지)
- 신청 및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 지원규모 : 소상공인 50백만원, 중소기업 100백만원 이내

기대효과

-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향상 도모

3-2.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 마케팅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증진 도모
 ◆ 수출상담 및 품목별 시장동향 분석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선 다변화 지원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해외바이어 단체 및 개별 상담 주선
- 지원내용 : 행사실비(참가비, 통역비, 시장조사비 등) 및 항공비 일부 지원(50%)
- 사업비 : 50백만원

2018년 실적

2018년도	파견내역	비고
참가업체	제일위생 등 6개사	
파견기간	04. 08. ~ 04. 14.	
파견국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2019년 계획

- 파견시기 : 연중 1회
- 파견국가 : 2개국(미정)
- 지원대상 : 8개사 내외
- 사업비 : 50백만원

기대효과

-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증진 도모
-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의 품질경영체계 확립과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



문의처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 ☎ 032-930-3359



문의처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 ☎ 032-930-3359

3-3. 강화군 이전 또는 신설 기업 보조금 지원

◆ 군민 고용, 교육훈련 및 본사이전 또는 신설기업 지원으로 군민고용 및 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지원대상 : 공장을 군으로 이전 또는 신설 중소기업
 - 사업비 : 50백만원
 - 신청 및 접수처 : 강화군 경제교통과
- 2018년 실적**
- 보조금 지원 : 없음
- 2019년 계획**
- 고용보조금 : 군민 5인 초과 신규 채용
[30만원/인(초과인원)/월(6개월)/최대2억]
 - 교육훈련보조금 : 군민 5인 초과 신규 채용 후 교육훈련 실시
[30만원/인(초과인원)/월(6개월)/최대2억]
 - 본사이전보조금 : 매출액 400억원 이상 기업이 이전시평상시 고용인원 5인 초과
[30만원/인(초과인원)/최대 3억]
- 기대효과**
-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향상 도모
 - 군민채용 우수기업에 임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제고

3-4. 강화 일자리 잡(JOB)다(多) - 강화산단 론칭 프로젝트

◆ 강화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강화 및 인근지역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내용
 -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 고령자, 여성, 청년)일방적 공급자 중심의 취업지원서비스가 아닌 구직자 needs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 * 1:1 취업상담을 시작으로, 동행면접,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다양화
 - (강화일반산업단지 기업지원서비스)신규 구인수요 조사, 찾아가는 기업자문단 '강화 SOS넷' 운영(블록톡 연계, 강화일반산단 블록톡 추진)
 - * 분야별 전문위원 위촉, 기업 직접 방문 애로사항 청취 후 컨설팅

- 2018년 실적 및 2019년 계획**
- 교육관 개관 : 2018. 5.
 - 사업실적 및 계획

구분	2018년 실적	2019년
고용창출(명)	146	120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명)	659	300
구인구직 만남의 날(회)	11	10
동행면접(명)	21	20
찾아가는 일자리상담(회)	10	10
찾아가는 기업자문단(社)	6	10

- 기대효과**
- 강화군 특성에 맞는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통한 관내 기업의 안정적 일자리 생태계 구축
 -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강화군 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문의처**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 ☎ 032-930-3359

 **문의처**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 032-440-4232
강화군 일자리지원센터(지역고용전략연구소) ☎ 032-932-2292-3

2019 인천기업 지원정책 모아모아
기업이 웃는 날까지 정책들고 직접 찾아가는 블록톡!

04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광역시 지원사업
BLOCK TALK!

4-1. 인천지식재산센터 운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특허 및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화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활동을 지원

사업개요

- 국내·외 지식재산권리화, 특허,디자인, 브랜드 컨설팅 지원
- 글로벌IP 육성지원, 중소기업 IP 경영지원
- IP 창업존, IP 디딤, IP 나래프로그램 지원
-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국내외 분쟁 소송보험 등
- 발명 및 특허인구의 저변확산을 통한 기반조성
- 발명품토 조성의 기여로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2019년 계획

- 무료지식재산상담소 운영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무료변리상담
 - 상담일시 : 매주 화요일 14:00~17:00

권역	구역	상담 장소
북동	부평구, 계양구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2층 이노카페)
남서	중·동·남구, 옹진군	인천IT타워 IBITP(6층 상담실)
남동	남동구, 연수구	인천상공회의소 (2층 IP창조Zone)
연수	연수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미추홀타워(7층 상담실)
북서	서구, 강화군	서구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2층 회의실)

- 글로벌 IP기업육성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최근 수출실적이 있거나, 19년 수출예정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지원규모	비고
특허(PCT) : 3,000천원	- 연간 (7천만원 내) - 3년간 (2억 1천만원내)
특허(개별국) : 7,000천원	
상 표 : 2,500천원	
디 자 인 : 2,800천원	
선 택 형 IP : 10,000천원 이내 (특허맵, 브랜드개발, 디자인개발)	

지원규모	비고
특허기술시물레이션 : 6,000천원 이내	
맞춤형IP맵	특허 20,000천원 이내 디자인 20,000천원 이내
비영어권 브랜드 : 40,000천원 이내 글로벌IP경영진단 : 15,000천원 이내 디자인&특허융합 : 35,000천원내	

※ 기업분담금 : 30% (현물 10%, 현금 20%)

-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최근 3년간 국내 1건이상 출원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단,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지원규모	비고
국내/외 IP컨설팅	
특허/디자인맵	각 세부사업 10,000천원 내
브랜드개발	- 기업당 2건 이내 - 연간 20백만원 내
디자인개발	
특허기술시물레이션 : 6,0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30% (현물 10%, 현금 20%)

- IP 디딤돌
 - 지원대상 : 인천시민, 학생,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지원규모	비고
아이디어 권리화(특허)	분담금 제외한 전액
아이디어제품화(3D설계)	분담금 제외한 전액

※ 기업분담금 : 20% (국내권리화 창작교실 교육생, IP디딤돌 교육 수료생은 면제)

● IP창업Zone

지원규모	
아이디어 사업화 교육	전액 지원
3D설계·프린팅	1,200천원 이내
지식재산·창업컨설팅	900천원 이내
IP투자 오디션	전액 지원

● IP 나래프로그램

- 지원대상 : 기술을 보유한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및 전환창업 후 5년 이내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지원규모		
IP 컨설팅 등	특허디자인 분석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기업별 2,500천원 이내
	브랜드 디자인 전략수립	

※ 기업분담금 : 30% (현물 15%, 현금 15%)

●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수출(예정)중소기업 대상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지원규모	
수출전략 컨설팅	2,800천원 이내
현안전략 컨설팅	2,800천원 이내
소액 컨설팅	4,500~8,400천원 이내
4차산업혁명기반기술 보호	28,000천원 이내
K 브랜드보호 컨설팅	7,000~28,0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30% (현물 10%, 현금 20%)

●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술 및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지원규모		
국내권리화	특허	1,200천원 이내
	상표	250천원 이내
	디자인	350천원 이내
IP 컨설팅 등	특허(PCT)	3,000천원 이내
	특허(개별국)	7,000천원 이내
	상표	2,500천원 이내
	디자인	2,8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소기업 (10%), 중기업(30%)

● 한·중 IP 솔루션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지원규모	
중국 內 IP사전분석	8,000천원 이내
중국 內 권리화 또는	기업당 2건 이내
New IP창출	연간 20백만원 내

※ 기업분담금 : 30% (현물 10%, 현금 20%)

●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구축

사업명	대상
지자체네트워크	지자체공무원
IP경영인협의회	IP 관련 기업인
지식재산재능나눔	개인 또는 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 특허기술메일링서비스

지원규모	비고
특허정보제공 : 70개사	기업당 1건 이내

※ 지원사업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기대효과

-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지재권 애로해결을 통한 지역 지식재산권 창출 제고
- 시민 및 기업의 지식재산권 마인드 확산
- 발명 및 특허인구의 저변확산을 통한 지재권 활성화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확대

05

(재)신용보증재단

인천광역시 지원사업
BLOCK TALK!

5-1.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증지원

- ◆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보증지원

사업개요

- 보증규모 : 5,800억원
- 대 상 :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8억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 금융기관 : 재단과 보증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 보증요율 : 연 2%이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지원절차
 - 지원신청(업체) → 심사(재단) → 보증서발급(재단) → 대출(은행)

2018년 실적

- 25,817건 / 5,725억원

2019년 계획

- 신청접수 : '19. 1. ~ 보증 한도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대효과

- 300만 도시 인천의 신성장동력 발굴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재단의 상생 발전
- 건전보증 공급을 통한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안정 도모

5-2.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세기업 보증지원 확대

- ◆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통한 서민생활안정 도모

사업개요

-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원절차
 - 지원신청(업체) → 심사(재단) → 보증서발급(재단) → 대출(은행)

2018년 실적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희망키움 협약보증 : 1,189건 / 301억원
- 한국GM 피해기업지원 특례보증 : 1,025건 / 237억원
-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 : 2,747건 / 332억원

2019년 계획

-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햇살론)
 - 대상기업 : 저신용자 및 저소득자
 - 보증한도 : 업체당 2천만원이내
-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 대상기업 : 도소매업, 서비스업등을 영위중인 기업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이내
-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보증
 - 대상기업 : 인천시 정비사업 구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이내

기대효과

- 제도권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 및 생활 안정 도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의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4226~8)
 인천신용보증재단 영업관리부 ☎ 032-260-1542, 1549)



문의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4226~8)
 인천신용보증재단 영업관리부 ☎ 032-260-1542, 1549)

5-3.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보증

- ◆ 보증소외대상에 대한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제공으로 보증저변 확대
- ◆ 능동적 보증서비스 제공으로 고객편의 증진

- 사업개요**
- 경기침체 및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 상인과 내륙 접근성 제한으로 보증신청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대한 이동출장소 운영으로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제공
- 2018년 실적**
- 도서지역 이동출장소 운영실적 : 6건 / 115백만원
 - 강화도, 교동도
 - 전통시장 및 청천지구 재개발구역 이동출장소 운영실적 : 16건 / 235백만원
 - 모래내시장, 강남시장, 석바위시장, 작전시장, 신흥시장, 청천1동사무소
- 2019년 계획**
- 도서지역 이동출장소 운영 확대
 - 대상 : 백령도, 대청도, 덕적도, 영흥도, 강화도 등
 -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 이동출장소 운영
 - 대상 :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과 고금리 사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 기대효과**
- 지리적으로 소외된 도서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서비스 확대로 경영안정 도모
 - 고객에게 찾아가는 능동적인 보증서비스 실천으로 편의증대 및 고객 만족도 제고

06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지원사업
BLOCK TALK!



문의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4226~8)

인천신용보증재단 영업관리부 ☎ 032-260-1542, 1549)

6-1. 중소기업 협동조합 조직화

◆ 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로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자의 기회 균등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사업개요

- 중소기업 협동조합 조직화
- 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사업 개발 지원
- 협동조합 협의체를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제시
- 인천지역 협동조합 현황 : 36개 조합
 - 제조업(19개), 도소매업(15개), 서비스기타(2개)

2018년 실적

- 협동조합 운영지도
 - 정기총회지도 : 36개 조합
 - 협동조합 운영지도
 - 신규설립조합 대상 정관, 규약, 규정 제·개정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지도
 - 기능활성화 운영지도
 -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컨설팅 제공 등
- 협동조합 협의회 운영
 - 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총3회)
 - 협동조합 상근이사협의회(총6회)
 - 협동조합 실무자협의회(총1회)

2019년 계획

- 협동조합 신규설립 지도 및 운영지도
- 협동조합 제 협의회 운영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공동사업컨설팅,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우수 협동조합 견학 등

기대효과

- 공동사업 개발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능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032-437-8705

6-2.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운영

◆ 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 정신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의거 공제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자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도모

사업개요

- 중소기업자가 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일정금액의 부금을 납입하고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출
- 가입조건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 대출자격 : 가입 후 4개월 이상 부금 납입한 업체
- 대출종류 및 조건

구분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대출사유	받을어음, 가계수표 등 매출채권 회수 곤란시	상업어음 및 가계수표의 현금화 지연시	단기운영자금 필요시
대출조건	무이자, 무보증 담보(부동산)	연 3.5%~8.38% 무담보, 담보(부동산)	연 3.5%~9.63% 무담보, 담보(부동산)
대출한도	납입부금 7배 이내	납입부금 7배 이내	납입부금 3배 이내
대출기간	3년	180일 이내	1~3년
상환방법	6개월 거치 30개월 원금분할상환	일시상환 (어음 추심에 의한 상환)	만기 일시상환

2018년 실적

- 가입현황 : 766개 업체(누적가입)
- 대출현황 : 180억원

2019년 계획

- 대출계획 : 200억원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방지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 거래로 인한 부실채권 예방효과 극대화로 경영능력 제고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032-437-8705

6-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운영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폐업·사망, 퇴임·노령 등에 대비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운영

사업개요

- 가입대상 :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 부금종류 : 월 5만원 ~ 월 300만원 (1만원 단위)
- 납입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 공제제도 특징
 -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 연금저축과 별도로 연 200~500만원까지 소득공제
 - 공제금은 채권자 압류가 금지되어 최소한의 생활자금 확보가능
 -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시 월부금의 150배 이내 추가보험금 지급
- 부금납부 12개월부터 부금내 대출
- 공제금 지급사유

폐업·사망	퇴임·노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의 폐업 ○ 법인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지급 청구시

2018년 실적

- 15,733명 가입 (12월말 현재)

2019년 계획

- 16,000명 가입
-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월1만원 / 연12만원) 지원

기대효과

- 최적의 稅테크와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기업
 - 소상공인의 노후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

6-4. 파란우산 공제

◆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에서 직면하는 화재, 영업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서 기업보호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손해공제 (*13.11.25일 개시)

사업개요

- 상품종류
 - 화재공제
 - 공제의 목적물(건물, 공장 등)이 화재사고(벼락 포함)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
 - 영업배상책임공제
 - 피공제자의 영업행위와 관련,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발생한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 재산종합공제
 - 모든 재산에 발생하는 실질적 손실이나 손상에 대한 물적 위험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기업휴지손해 및 배상책임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일괄담보 상품
 - 기업사랑종합공제
 - 하나의 공제증권으로 화재손해 뿐만 아니라 기계, 기업휴지 및 배상책임손해 등을 담보함으로써 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통합 보장

기대효과

- 중소기업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영업상 사고위험에 대비 시장보험료보다 10~25% 싼 비용으로 가입,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032-437-8705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032-437-8705

6-5.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 공공기관이 필요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방식을 통해 구매토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난 완화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공사에 대하여 정부 및 기초 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근거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및 직접생산 확인
 -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발주 등
 - 공공구매의 효율성 제고 및 이행력 확보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
 - 원자재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등

2018년 실적

- 직접생산확인발급 : 1,250개 업체(*세부품목별 : 4,409건)

2019년 계획

- 공공구매DB 정보망 업체 등록 및 직접생산 확인

기대효과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경쟁력 확보

07

인천광역시 지자체별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지원사업
BLOCK TALK!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032-437-8705

7-1. 인천지역 기업지원제도(연수구)

연번	사업명	지원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1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	중소기업의 청년 직접 고용에 대한 지원금 지원	· 참여기업 : 관내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월2,100천원 이상 급여지급 가능 기업) · 참여청년 :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34세이하 미취업 청년	· 기업지원금 : 월 1,600천원/월/인 (총 24개월 38,400천원) · 참여청년의 역량강화 직무교육 · 사업비: 488,000천원 (국비 243,000천원, 구비 245,000천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032-749-8465

7-2. 인천지역 기업지원제도(남동구)

연번	사업명	지원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1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증진을 위한 무역 사절단 파견	남동구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매출액 1,000억 이하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참가비, 통역비, 홍보비, 항공료 일부 지원 · 파견시기 및 지역 - 체코/폴란드(4월) - 러시아/몽골(9월) ·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 예산 - 160,000천원	·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5162 ·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company_support
2	미니클러스터 무역사절단 파견	미니클러스터 동종 업체별 수출 유망지역을 선정하여 무역 사절단 파견, 지원	전년도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인 남동구 미니클러스터 회원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참가비, 통역비, 홍보비, 항공료 일부 지원 · 파견시기 및 지역 - 미얀마/태국(6월) · 지원규모 - 13개사 내외 · 예산 - 60,000천원	·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2697 ·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company_support

연번	사업명	지원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3	해외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해외시장 및 신규바이어 발굴을 위한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남동구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참가비일부 (업체당 500만원 한도) · 지원규모 - 47개사 내외 · 예산 - 120,000천원(구비)	·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5164 ·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company_support
4	해외 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수출판로 확대 및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전년도 매출액 500억 이하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참가비 일부 · 파견시기 및 지역 - 베트남(5월) - 홍콩(11월) · 지원규모 - 16개사 내외 · 예산 - 80,000천원	·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5162 ·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company_support
5	해외 지사화 지원	KOTRA 해외무역관 사용 협약체결비 지원	전년도 매출액 500억 이하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KOTRA 해외지사 협약체결비 일부 지원(업체당 200만원 한도)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 예산 - 30,000천원	·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5164 ·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company_support
6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	관내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위한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관내 본사 및 공장이 등록된 전년도 매출액 500억 미만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국내및해외인증 획득 시 발생비용 일부 지원 (업체당 200~500만원 한도) ·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 예산 - 100,000천원	·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2698 ·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company_support
7	기술개발 장비 사용료 지원	관내기업의 기술고도화 유도를 위한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	관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장비사용료의 70% 지원 (업체당 200만원 한도) · 지원규모 - 7개사 내외 · 예산 - 15,000천원	·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2698 ·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company_support

연번	사업명	지원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8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국내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관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참가비 일부 (업체당 200만원 한도) ·지원규모 -15개사 내외 ·예산 -30,000천원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2698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company_support
9	중소기업 기술 지원단 운영	기술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단 파견 및 기술지도 지원	관내 분사 및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산·학·연 관련 전문가의 기술지원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예산 -50,000천원(구비)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2697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company_support
10	산업 재산권 출원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비용을 지원하여 산업재산권 보호와 신제품 개발 촉진	관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특허, 디자인, 상표 등록 등 지원 ·지원규모 -70개사 내외 ·예산 -100,000천원(구비)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2697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company_support
11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사업화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로 지역 고용 및 경제활성화 도모	관내에 분사, 연구소,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지원내용 -디자인계획, 제품설계, 샘플제작, 산업재산권 권리화 등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예산 -100,000천원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2697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company_support
12	국제지식 재산권 분쟁예방 지원	해외진출 시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보호활동 지원	관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 및 분쟁 해결 지원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예산 - 20,000천원(구비)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2697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company_support

연번	사업명	지원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13	스마트 공장 확산 지원사업	제조 자동화 설비 및 물류시스템 개선비용 지원	관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제조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 자동화 설비 구입 비용 (업체당 1천만원 한도) ·지원규모 -18개사 내외 ·예산 -200,000천원(구비)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2697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company_support
14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 개발과 시설투자 촉진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및 자립성장 기반 구축	관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연 1.7%~2.0%) ·보전규모 -업체당 3억원 이내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2693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company_support
15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	관내에 공장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연 1.7%~2.0%) ·보전규모 - 업체당 5천만원~3억원 이내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2693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company_support
16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채무에 대한 특례보증을 해줌으로써 원활한 자금유통으로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채무보증 ·보증한도 - 소기업 1억원 이내 -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2691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company_support
17	구민채용 기업 임금 지원사업	구민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로 서로 상생하는 고용서비스 지원	남동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구민을 채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 2019년 생활임금의 기준 (근로자 기본급) - 이상 : 60만원/인/월(6개월) - 미만 : 30만원/인/월(6개월) ※ 청년·고령자 채용 시 20만원 추가 지원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032-453-6063

7-3. 인천지역기업지원제도(서구)

연번	사업명	지원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1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	중소기업 재정 지원으로 청년에게 안정적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실업난 해소에 기여	관내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워크넷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참여 기업에 1인당 최대 월600천원, 6개월까지 지원 - 사업기간 : 예산소진시 까지	서구 사회적경제 일자리과 (560-5807)
2	기업&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구인·구직자를 위한 취업 지원과 채용행사 개최	관내 기업체 및 구직 희망자	- 상설채용관 및 금융채용 마당 :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1:1 맞춤 면접진행 (수시 /매주 금요일) - 채용한마당 : 관내 우 수기업과 구직자간의 만남의 장 행사 개최 (3,6,9,11월 19일) -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 관내 기업을 방문하여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구인 접수 (매주 화, 목)	서구 사회적경제 일자리과 (560-5800)
3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영환경을 개선시켜 설비투자 및 기술 개발 촉진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서구에 소재한 중소 기업	- 금융기관의 협약, 대출에 대한 이자 차액보전 (이자차액보전1.0 ~ 2.0%)	
4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된 기술지원단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컨설팅하고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	관내 공장등록기업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지원분야)에 대한 지도 및 자문 (업체당 300만원 범위 내외)	서구 기업지원과 (560-4442)
5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지원	마케팅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증진 도모	- 관내 공장등록 기업 - 공장 미등록 기업중 제조 전업을 30%이상	- 항공료(50%), 바이어 발굴비,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6	지식재산 창출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및 종합컨설팅을 지원 하여 중소기업의 국내 및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관내 중소기업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출원비용 지원 (소요비용의 70~90% 25~300만원 범위내)	

7-4. 인천지역 기업지원제도(옹진군)

연번	사업명	지원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1	옹진군 특례보증 (이자보전) 지원사업	옹진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례보증 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	대표자 및 사업장의 주소를 대출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옹진군에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업체별 최대 5천만원 대출, 대출금리 중 최대 3% 이자지원 · 사업규모: 260천만원	인천시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2543

2019 인천기업 지원정책 모아모아

기업이 웃는 날까지 정책들고 직접 찾아가는 블록톡!